### 학교법인 김포대학 및 김포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 1. 25 ~ 2. 19. (설 명절 주간 제외, 비대면 5일포함 15일간)

• 감사인원 : 16명

#### 2. 감사결과 지적사항

####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학교법인	조직·인사	교비회계	산단회계 ·연구비	입시·학사	시설·물품	계
지적건수	2	7	6	3	5	5	28

나. 세부지적 및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 학교법인 김포대학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A 교무·학사 개입 부당	
	○ 「사립학교법」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제61조에	ㅇ 기관경고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고등교육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사립학교법」	(연번 5번과 병합처리)
	제19조 및「학교법인 김포대학 정관('18.2.8.)」제2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학사	
	행정에 관하여 해당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취임승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김포대학 A는 2018. 2. 22. 신년사 관련 업무	
	회의(총장, 학부장 등 참석)에 참석하여 "2019년 입학정원	
	조정을 4월 27일 이사회 통과 일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2018. 3. 13. 총장이 주관하는 학부장회의에서	
	"○과, □과는 합쳐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붙임】	
	"A 교무·학사 개입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부터 20	
	20학년도까지 위 2018. 2. 22. 신년사 관련 업무 회의	
	등 총장이 주관하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학사, 회계, 조직, 시설 분야 등 교무·	
	학사 업무와 관련하여 24회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교무 · 학사 개입 현황

연번	분	루류	개입 사항 요약		이사장 교무·학사 개입 사항		교무・학사 개입 사항	최종 이행 결과
컨텐	대	소	개립 사망 표락	일자	행위자	개입 형태	내용	최당 이행 결과
1				2018.2.22. (목)	A	신년사 관련 회의	• '19년 입학정원 조정이 가능하므로 4월27일 이사회 통과 일정으로 추진 ※ 출처: 업무수첩	
2				2018.3.13. (화)	A	학부장 회의	<ul><li>○과, □과는 합쳐야 한다.</li><li>정원을 줄이면 충원율은 높아진다.</li><li>※ 출처: 업무수첩</li></ul>	
3		구조	(1) 2019 • 2020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사항 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폐과(□과)를	2018.3.14. (宁)	A	메일 (A→C, D, B, E)	<ul> <li>제목: 학과 조정</li> <li>내용: 화요일 학부/학과 조정회의 초안을 보내 드리니 내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여 학과장들과 의논 후 다음주 월요일에 학과별 안(정원외 학생 모집안, 산학협력/수익사업안 포함)을 취합하여 제출요망, 폐과 2개학과의 교수들은 타학과로 이전예정임</li> </ul>	<ul><li>5호 안건 "2019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li><li>6호 안건 "2020학년도 학과구조개편</li></ul>
4	학사	조정	지정하였으며 주요 보직자들과 이메일 을 통해 지시 및 보 고를 받고 이사회 안 건으로 심의	2018.3.20. (화)	A	학부장 회의	<ul> <li>2020년 학과 구조조정 건</li> <li>□과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li> <li>※ 출처: 업무수첩</li> <li>※ '18.3.23.(금) B(△학부장)은 A에게 '△학부의 2018년 3월 22일 학과개편방안 메일 보고(붙임: ▷과, □과, ▽과 개편방안)</li> </ul>	및 입학정원 조정안"  • 2019, 2020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시행 (2018.4.6.)  - 모집중지학과: □과, ▷과
5				2018.3.25. (일)	A	메일 (A→C, D, B, E, F)	<ul> <li>제목: 2019 2020 학과별 입학조정안</li> <li>붙임: 2019 2020 학년도 학과별 입학조정안</li> <li>내용: 월요일(3.26.)에 학과별 입학조정안을 논의하여 목요일까지 확정하고 4월4일 이사회에서 입학조정 안을 통과시킬 것임</li> </ul>	

	뷴	-류				이사장	교무・학사 개입 사항	77 - 1 - 1 - 1 - 1	
연번	전번 대 :		개입 사항 요약	일자	행위자	개입 형태	내용	- 최종 이행 결과	
6				2018.3.26. (월)	A	학부장 회의	<ul> <li>학과구조조정 논의</li> <li>※ 출처: 업무수첩</li> <li>※ '18.3.26.(월) E(전 ◁총장)은 A, C, B, D(학부장)</li> <li>에게 '2019 2020년 학과구조조정 및 정원조정' 메일보고</li> <li>(붙임: 2019 2020년 학과구조조정 및 정원조정)</li> <li>내용: 오늘 배부한 현황(2018.3.25.버전)에서 ◇과 2학년 정원을 60명으로 수정</li> </ul>		
7	학사	구조 조정	(2)A는 학과 계열화 방안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	2018 9 11	A	학부장 회의	<ul> <li>계열화는 신입생 줄이는데 효과적이다.</li> <li>※ 출처: 업무수첩</li> <li>※ '18.10.9.(화) B(△학부장)은 A에게 '△학부 계열화 방안을 A께 보고 드림' 메일 송부(붙임: ♡계열,</li></ul>	● 제1차 이사회(2018.4.4.) - ♡계열 신설	
8	학사	구조 조정	(3)2021학년도 학과구조 개편 관련 지시	2020.3.26. (목)	A	법인임원 간담회	<ul> <li>학교가 위험하다.</li> <li>○과, ♡과 모집이 안되면 책임져라.</li> <li>△학부가 인건비가 높다. 내년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들과 논의해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라.</li> <li>입시/충원율이 문제이니 2~3개 과는 정지시켜라. 노력하겠다 보다는 2개 과를 정지하라.</li> <li>내일 아침까지 총장에게 보고하고 폐과 정하라.</li> <li>※ 출처: 업무수첩, 법인임원 간담회 녹취록 (2020.3.26.○○녹취사무소)</li> </ul>	- 총장의견: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9	학사	입시	(4)신입생 충원 부족에 대하여 학과별 대책을 보고토록 지시	2019 12 23	A	부서장 회의 A대책보고	<ul> <li>(미충원) 4개 학과 90여명이다. 학과별 대책을 보고하라.</li> <li>※ 출처: 사실확인서(G, △학부 교수, 2020.8.14.)</li> <li>2019.12.23. A는 학과별 신입생 충원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고 학생 100% 모집을 종용함</li> <li>※ 출처: 업무수첩</li> </ul>	<ul> <li>12월 4주차 부서장회의 결과 보고 (기획실, '19.12.27.)</li> <li>총장지시: 2020학년도 수시 1, 2차 충원작업에 적극 협조요망</li> </ul>	

~ ~ ~	뷴	-류	레이 기존 스자			이사장	교무・학사 개입 사항	의로 시돼 づ 이	
연번	! 먼 대 소		개입 사항 요약	일자 행위자		개입 형태	내용	- 최종 이행 결과	
10				2020.1.6. (월)	A	입시관련 전체교수회의 (호프관125호)	<ul> <li>2021년 2월 3주기 평가 최선을 다해라.</li> <li>※ 출처: 사실확인서(H, ♡계열 교수, 2020.8.12.)</li> <li>2020.1.6. A는 3주기 대학평가에 대비하여 신입생 모집에 매진하라고 독려함</li> <li>※ 출처: 업무수첩</li> </ul>		
11	학사	전과	(5)전과제도 개선 지시	2019.9.2. (월)	A	부서장 회의	• 전과제도 확대, 계열별 운영으로 전과 쉽게 해 주어라. ※ 출처: 업무수첩	<ul> <li>2019학년도 제3차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2019.9.2.)</li> <li>전과조항 개정</li> <li>2019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회의 개최 결과 보고</li> <li>학칙 및 학칙시행세척 개정안 심의(2019.11.5., 기획실)</li> </ul>	
12	학사	직제	(6)계약학과 확대 지시	2017.2.9. (목)	A	A, 독립채산제 회의	• 전공 심화, 산업체 위탁, 계약학과를 늘려라. ※ 출처: 업무수첩	<ul> <li>2017-3차 미래전략위원회 안건(2017.5.9.)</li> <li>계약학과(3개과, ●과, ■과, 경▲과) 설치</li> <li>계약학과 개설 계획서(2017.8.24.)</li> <li>기존 2개과(■과, ▲과)에서 1개과(●과)추가설치</li> </ul>	
13	조직	인사	(7)센터장 보직자 교체 지시	2018.7.24. (화)	A	학부장 회의	• 센터장 바꾸자, 센터가 많은데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다. ※ 출처: 업무수첩	2018학년도 교원 보직 임면 현황 (2018.8.1.) - NCS지원센터 등 8개 지원센터장 교체 임명	
14	조직	일반	(8)부서별 월간업무 보고 지시	2017.3.14. (화)	A	학부장, 센터장 회의	<ul> <li>학부와 센터(6개)와 업무 조정</li> <li>공학부 월별 업무처리 내역 제출</li> <li>※ 출처: 업무수첩</li> </ul>	<ul> <li>46회에 걸쳐 주간업무보고 메일 송신 ('18.2.19.~'19.2.19., B→A)</li> </ul>	

Al W	분	-류				이사장	교무・학사 개입 사항	의 교 시의 교리	
연번	크먼 개입 사항 요약 대 소		개입 사항 요약	개입 사항 요약 일자		개입 형태	내 <del>용</del>	최종 이행 결과	
15				2017.3.18. (토)	A	메일 (A→B)	<ul> <li>제목: FW:A님, 부서별 월간 업무 내역입니다.</li> <li>첨부파일: 기획실월별 업무내역, □팀업무분장표, 산학협력단연간업무계획 포함</li> </ul>		
16				2017.5.18. (목)	A	학부장 회의, 총장 회의	<ul> <li>학과운영계획서 이사장한테 보내라.</li> <li>주간업무보고서는 수요일까지 메일로 보내라.</li> <li>출처: 업무수첩</li> </ul>		
17				2018.8.10. (급)	A	메일 (이사장→B)	• 내용. 앞으로는 주간업무보고에 현장실습센터 주간업무 보고도 첨부하기 바람		
18				2017.2.2. (목)	A	학부장 회의	• 독립채산제 실시 ※ 출처: 업무수첩		
19	회계	예산	(9)예산제도를 개편하여 학과별로 사업중심 으로 운영토록 지시 ※ 사 업 별 예 산 제 도 (IBBS) 도입	2018.8.6. (월)	A	학부장 회의	<ul> <li>2019년도 사업계획서 작성</li> <li>교육과정 개편, 대체 과목의 폭을 넓혀라.</li> <li>※ 출처: 업무수첩</li> <li>※ '18.8.22.(수) B(△학부장)은 이사장에게 '△학부의 2019년도 학과별 사업계획서' 메일 송부(붙임: 2019학년도 △학부 사업계획서)</li> <li>내용: 2019학년도 △학부의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학과 운영을 수입대비 지출을 갖도록 하는 IBBS제도에 대비하여 작성하여 보고드림</li> </ul>	<ul> <li>HOPE2025 중장기발전계획서(기획 실, 2018.12.21.)</li> <li>사업별 예산제도(IBBS) 도입 포함</li> </ul>	
20			()	2019.1.28. (월)	A	학부장 회의	<ul> <li>학부 업무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li> <li>학부별 예산 내려준다.</li> <li>* 출처: 업무수첩</li> <li>* '19.1.28.(월) B(△학부장)은 A에게 '△학부 예산 조정표' 메일 송부(붙임: △학부 예산 조정표)</li> <li>내용: A님께서 요청하신 ■처와 각 센터의 예산에</li> </ul>		

чя	분류		게이 가능! 스아			이사장	최종 이행 결과		
연번	대	소	개입 사항 요약	요박 일자		개입 형태	내용	최당 이행 결과	
							서 우리 학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파랑색으로 표시하여 보내드립니다.		
21				2019.10.8. (화)	A	ERP 도입 회의	• 사업별예산제도 및 ERP 도입 관련 회의 참석 ※ 출처: 문서(사무처, 2019.10.11.)		
22				2019.11.18. (월)	A	ERP 도입 회의	• 성과평가 목적으로 내년부터 ERP, IBBS 시작한다. • 모든 지출은 재원(등록금, 비등록금)을 마련하여 써라. ※ 출처: 업무수첩		
23				2019.12.17. (화)	A	'20학년도 사업운영계획 컨퍼런스	• IBBS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회의 ※ 출처: 문서(▶사업단, 2019.12.19.)		
24	시설	기자제	(10)실습기자제 감사 지시	2018.8.20. (월)	A	학부장 회의	• 실습기자재, S/W 계약 기획실 주관 감사 실시한다 ※ 출처: 업무수첩	<ul> <li>2018학년도 부서별업무감사실시 계획보고(감사실. 2018.9.6. 총장결재)</li> <li>▼처 업무부분 감사실시 통보(감사실, 2018.9.6., 총장결재) [증빙18-2]</li> <li>▼처 업무부분 감사자료(연도별 계약체결현황, 실습기자재 대장)제출(업무협조, 2018.9.14. ▼처장 전결)</li> </ul>	

<sup>※</sup> C(전 ▼과학부장), D(▷과), B(전 △학부장), E(전 ◁총장), F(전 총장)

기관명 : 학교법인 김포대학

				7	र  -	적 사 항			처	분
	수익	용	기본지	H산 괸	리	부적정				
	О Г	사립	학교법	」제27	조에	따라 준용되는 「1	민법」	제61조에	ㅇ 기관	경고
	U	- 르 면	티 법인	- 1의 o	] 사는	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	의로 그		
									○ 厚日	
								_		41.1 cm
	저	[] 앙	및 제	3항에	딱트	면 학교법인은 대학	악의 연	!산 악ㅛ		
	ゔ	계	운영수	-익총의	박 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	용 기본	–	· 수익 창출
	자	l산을	: 확보	하되 전	년문대	대학의 경우 <b>2</b> 00억	원 이성	을 확보	,	대 등)을 거나, 매긱
	ਨੇ	(여)	ㅑ 하며	<i>,</i> 연간	학.	교회계 운영수익총	액에 8	해당하는		거리, 레스 익성이 있는
	フ	-액의	] 수익	용 기년	보재~	산은 그 총액에 한	·국은행	이 발표	2010	기본재신
				-	·	행 가중평균금리 중		,	ㅇ로 다	체취득하는
									등의 소	스치를 하기
		•	, ,	, –		금액 이상의 연긴	I 十9	이 발생	바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u>,</u> ŏ	나교법	법인 김	]포대학	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7 5	등 6필지		
	( [	면적	352,788	8m², '6	6. 8. 2	22., '96.8.27. 취득	, '21	공시지가		
	3,	099,0	)42천원	l) 임이	:에	대하여 2017년부	터 201	9년까지		
				,		니하고 있는 사실 <b>ං</b>				
							1 2 1			
	*					· 33,039천원 납부	- 1 - 1			
		•	< 수익	용 기본	·재슨	: 제세공과금 납부 :	현황 >	(단위: 천원)		
ſ		<u> </u>	면적		취득		운용수익	제세공과금액		
ľ	연번 구분		( m² )	취득일	경로	소재지	('17~'19)	('17~'19)		
∦	1		,	1996. 8. 27. 1996. 8. 27.	출연 출연					
╟	3 E7	+		1996. 8. 27.	출연	2	0	15,612		
ı	4 토7	다 임야	4	1996. 8. 27.	출연					
	5 토7	다 임야	218,877	1966. 8. 22.	출연	Н	0	17,427		
	6 토7	다 임야	113,852	1966. 8. 22.	출연	,	0	17,427		

기관명 : 학교법인 김포대학, 김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대학직원 법인업무 처리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학교법인 김포대학】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학교법인	ㅇ 경고(1명)
	김포대학 정관」제81조, 제84조 및 제89조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법인의	【김포대학교】
	정원은 일반직 4명, 기능직 2명 등 정원 총 6명을	ㅇ 경고(6명)
	두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학교법인 김포대학은 2017회계연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관에 의한 법인의 직원을 두지 않고	
	겸직 근거도 없이 김포대학교 I에게 법인업무(총괄)를	
	담당하게 하는 등【붙임】"대학직원 법인업무 겸직	
	현황"과 같이 김포대학교 I 등 6명을 2017회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 근거 없이 법인사무국장, 법인	
	사무원으로 겸직토록 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대학직원 법인업무 겸직현황

연번		대학 겸직자	겸직 기간	비고	
	소속	소속·직위	성명	ייין רם	.,,
1	김포대학교	사무처장	-	2017.3.1.~2017.11.30.	법인업무총괄
2	김포대학교	사무처장	-	2017.12.1. ~ 2018.4.15. 2020.4.3. ~ 2020.7.31.	법인업무총괄
3	김포대학교	사무처장	-	2018.4.16. ~ 2020.3.16.	법인업무총괄
4	김포대학교	사무처장	-	2020.9.1. ~ 현재	법인업무총괄
5	김포대학교	기획실 5급	-	2017.3.1.~2017.6.30. 2017.12.1.~현재	법인담당, 회계
6	김포대학교	기획실	-	2017.7.1. ~ 2017.11.30.	법인담당, 회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	---------	-----

◀과→<과)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지원자 K등 7명에 대한 초빙분야와 학위의 전공적격 여부, 연구실적, 경력심사 등에 대한 기초 및 전공심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과 전임교원 현황(2019-1학기)

성명	교원구분	전공					
8.9	(학과발령일)	학사	석사	박사			
L	정년트랙 (2012.3.)	법학	경찰행정	경찰학			
М	산학중점 (2015.3)	경호학	경호학	경호학			
J	정년트랙 (2018.7.)	수학	정보공학 경제학	전자계산			

※ J 교수 소속학과 이력: ★전공(1998.3. ~ 2005.2.) → ⊙과(2005.3. ~ 2018.6. / 학과명변경 ⊙과 → ◀과) → ◇과(2018.7.)

【참고1】
2019-2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현황

학기	학과	초빙 심사		내부 심	]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월 기	44	분야	단계	소속	전공	소속	전공
2019-2	<b>◇</b> 과	◆학 또는 &학	기초 및 전공심사	<b>J</b> (김포대, ◇과)	정보공학, 경제학 (석사) 전자계산 (박사)	-	-

### [참고2] <u>학과변경 이후 J 교수 담당 교과목 현황</u>

학기	구분	교과목	시수	비고
2018-2학기	교양	-	2	
2010-2971	전공	-	3	
2019-1학기	교양	-	2	
2019-1억기	교양	-	2	
	교양	-	2	
2019-2학기	교양	-	2	
	교양	-	2	
2020-1학기	교양	-	2	
2020-1약기	교양	-	2	
2020-2학기	교양	-	2	
ZUZU-Z ¾ /	교양	-	3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직원채용 심사 절차 미준수 및 A 부당 관여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임용은	【①, ② 관련】
	학교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ㅇ 중징계(1명)
	임용하고,「사립학교법」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ㅇ 통보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사립학교법」제19조, 제20조의2,	- 직원 공개채용 시
	「학교법인 김포대학 정관」제23조 및 84조의2에 따르면	공고문에 안내한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일정대로 채용심시를 진행하고 총장의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임용 제청 전에
	학교법인 임원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A가 채용과정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여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수행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하기 바람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하고 학교를 대표하며, 「김포대학교 계약제직원 임용규정」	별도조치 예정대상 (1명)
	제9조에 따르면 계약제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	(연번 1번에 포함조치)
	으로 하고 신규임용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2018학년도	【① 관련】
	김포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문(2018.3.9.)」에 따르면	○ 통보(문책, 경징계)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하고 응시원서	(3명)
	접수기간은 2018. 3. 9. ~ 3. 19. 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 20.(화), 면접심사는 3. 21.(수), 최종합격자 발표는	
	3. 22.(목)으로 되어 있는데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직원채용 관련 심사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항】 ①	
	- 김포대학교 F는 2018학년도 행정직(채용인원 3명) 공개채용을	
	위한 원서접수(공고일: 2018.3.9. ~ 3.19.) 결과 O 등 6명이	
	지원하였는데도 지원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용절차를 진행	
	하지 않고 2018. 3. 23. 2차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위 2차	
	공고에 지원한 P 등 2명 또한 이전 채용 시 불합격자	
	라는 이유로 2018. 3. 30. 3차 공고(채용인원 4명)를 시행한 후	
	위 3차 공고에 지원한 R 등 7명을 포함한 누적 지원자	
	15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2018.	
	4. 13. Q 등 2명을 임용대상자로 결정하는 등【붙임】	
	"행정직 공개채용 공고 후 채용심사 절차없이 추가공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행정직 채용 2건에 대하여 원서	
	접수 마감 후 채용공고에서 안내한 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추가공고를 시행한 후 공고 차수별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위 Q	
	등 2명을 임용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A의 직원채용 부당 관여에 관한 사항】 ②	
	- 학교법인 김포대학 A는 2018년 행정직 채용(공고일:	
	<i>'</i> 18.3.9.~4.9. / 1~3차 공고, 채용예정인원 4명)을 위한 면접심사	
	결과를 심사 당일(2018.4.10.) S으로부터 보고*받자 면접	
	2순위까지만 임용제청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포대학교는	
	2018. 4. 13. 면접 결과 1,2순위인 Q과 T를 임용제청 대	
	상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 김포대학교 F는 2018.4.10. 면접심사 결과를 A에게 보고하도록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지시하였으며, A의 결정에 대하여 U가 2018.4.11.4순위	
	자까지 채용을 건의하였으나 A가 거부	
	※ 김포대학교 행정직 채용절차	
	·직원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총장, 사무처장, 채용	
	부서장 등 3명 이상/면접심사 결과로 합격자 결정)	

【붙임】 <u>행정직 공개채용 공고 후 채용심사 절차없이 추가공고 현황</u>

채용건명	공고 차수	채용 인원	공고기간	지원자		서류 전형	면접일시 및 인원	면접결과
	1차	3명	'18.3.9.~ 3.19	- - - - - (6명)				
행정직 (계약직)	2차	3명	′18.3.23.~ 3.29	- - (2명)	<b>→</b>	<b>'18. 4. 9.</b> (1~3차 지원자 15명 대상)	'18. 4. 10.(서류전형합격자 대상10명 면접)	2명 합격 (T, Q)
	3차	4명	′18.3.30.~ 4.9	- - - - - (7명)				
GKC센터	1차	1명	'18.10.2~ 10.10.	- (1명)		(10, 10, 10	(10, 10, 20	<b>2</b> 1 11)
행정직 (계약직)	2차	1명	'18.10.11.~ 10.18.	- - - (3명)	<b>→</b>	<b>'18. 10. 19.</b> (1~2차 지원자 4명 대상)	<b>'18. 10. 22.</b> (4명 면접)	합격자 없음

#### 【참고1】

### 행정직 지원자 지원차수별 현황

채용 건명	공고 기간	지원자 (생년)	학력	주요 경력	자격사항	면접 여부
		-	-	-	정보처리기사	-
		-	-	-	JLPT 2급	-
	1차 접수	-	-	-	워드프로세서	-
	(6명)	-	-	-	MOS	면접
		-	-	-		-
		-	-	-		-
	2차 접수	-	-	-	MOS	면접
행정직	(2명)	-	-	-	TOEIC 720	면접
		-	-	-		면접
		-	-	-	TOEIC 940 컴퓨터활용능력	면접 <b>(합격)</b>
		-	-	-	MOS 전산회계	면접
	3차 접수	-	-	-	사회복지사 사무정보기기응용	면접
	(7명)	-	-	-	평생교육사 <b>2</b> 급	면접 <b>(합격)</b>
		-	-	-		면접
		-	-	-	유통관리사	면접
	1차 접수 (1명)	-	-	-	영어미술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면접
GKC 센터		-	-	-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면접
행정직	2차 접수 (3명)	-	-	-	중등교사	면접
	(- 0)	-	-	-		면접

#### 【참고2】

### 행정직 면접심사 결과

□ 면접일 : 2018. 4. 10.

□ 면접위원 : F, U, D, B, V 5명

□ 면접심사 결과

구 분	면 접 대상자	F	U	D	В	v	총점	종합 점수	순위	최종 합격
	-	70	88	70	56	70	354	70.8		
	-	85	90	75	97	75	422	84.4	4	
	-	85	90	75	94	80	424	84.8	3	
	-	80	80	60	68	87	375	75		
행 정	-	90	90	80	86	97	443	88.6	2	합격
<sup>3</sup>     직	-	75	70	64	62	75	346	69.2		
	-	80	75	64	60	80	359	71.8		
	-	95	95	87	86	93	456	91.2	1	합격
	-	80	80	70	60	85	375	75		
	-				결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교원 임용 결격사유 미조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및「김포대학교 인사	ㅇ 주의(2명)
	규정」제13조에 따르면「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김포대학교는 2017. 3. 1. ■과 조교수로 W를 신규채용	
	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2017. 1. 23. 학교	
	법인 김포대학에 임용 제청하는 등 【붙임】"신원조회	
	미실시 교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2017. 3. 1.부터 2019.	
	3. 1. 까지 위 W 등 교원 7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결	
	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임용	
	제청한 사실이 있음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신규 채용된 교수 전체 '이상없음' 확인 ('21.2.8.~2.10.)	
	(21,2.0.~2.10.)	

【붙임】

### 신원조회 미실시 교원 신규채용 현황

ਨੀ ਸੀ	<i>λ.</i> &	オルユ	성명	임용일	제청 사항 결격사유		청 사항	임용	용 사항
연번	소속	직급	'ধ'ন্ত	# <del>장</del> 된	조회 여부	결재자	결재일자	결재자	결재일자
1	-	조교수	-	2017-03-01	미실시	총장	2017-01-23	이사장	2017-02-07
2	-	조교수	-	2017-03-01	미실시	총장	2017-01-23	이사장	2017-02-07
3	-	조교수	ı	2017-09-01	미실시	총장	2017-08-16	이사장	2017-08-25
4	-	조교수	-	2017-12-01	미실시	총장	2017-08-16	이사장	2017-08-25
5	-	조교수	-	2019-03-01	미실시	총장	2018-12-13	이사장	2018-12-21
6	-	조교수	-	2019-03-01	미실시	총장	2018-12-13	이사장	2018-12-21
7	-	조교수	-	2019-03-01	미실시	총장	2018-12-13	이사장	2018-12-21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교원 겸직 부적정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ㅇ 경고(5명)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김포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전임이 아닌 직위를	
	위촉받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 ◈과 X는 2019. 3. 1.부터 2021. 2.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허가 신청없이 □□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붙임】"겸직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조교수 X 등	
	교수 5명은 2019. 3.부터 2021. 2. 감사일 현재까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위 □□ 등 5개 업체(재단) 대표 등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 겸직 부적정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겸직기관명	겸직기관 직위	미허가 겸직기간	비고
1	-	조교수	-	-	대표	2019.3.1.~ 현재	
2	-	조교수	ı	-	대표	2020.3.1.~ 현재	
3	-	조교수	1	-	대표	2019.3.20.~ 현재	기간 연장
4	-	교수	-	-	사외이사	2020.6.22.~선임일로부터 3년 (2021.1.27.사임)	기간 연장
5	-	교수	1	-	비상임 이사	2020.7.1~2022.6.3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범죄처분 통보자 미조치	
	○ 「사립학교법」제61조, 제64조 및「학교법인 김포대학 정관」	ㅇ 경고(2명)
	제55조의2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	ㅇ 통보
	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	- 범죄사실 통보자에
	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 하기 바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아기 마림
	되어 있고, 임용권자는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20.6. 29. △△지방검찰청▷▷지청으로	
	부터 △학과 교수 Y가 '업무방해'혐의로 구약식 벌금	
	50만원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있음	

【참고】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현황

사건		피의지	}		범죄처분 결과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처분청	처분일	처분 접수일	죄명	처분내용	
					2020 2.12	2020 ( 20	명예훼손	죄가안됨	
-	_	-	-	-	2020.3.12.	2020.6.29.	업무방해 (아파트 관리시무소 게시물 훼손)	기소 (구약식 벌금50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국외여행 미신고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ㅇ 기관주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제58조 및「김포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교원 연구년,	
	국외여행 및 파견에 관한 규정('14.11.19.)」제2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외여행은 강의 및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학회참석, 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외로 여행하는 것이며, 국외여행 시	
	출국 전 교직원해외여행신고서(서식제7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 ◎과 Z는 2019. 11. 14.부터 2019. 11. 18.까지	
	교직원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는 등 【붙임】 "국외여행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7. 3.	
	부터 2020. 2.까지 위 Z 등 교직원 27명은 교직원해외	
	여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음	

【붙임】

### 국외여행 미신고 현황

연번	학과	직위	성명	국외여행 기간	일수
1	-	-	-	2019. 11. 14. ~ 2019. 11. 18.	5
_				2017. 10. 15. ~ 2017. 10. 19.	5
2	-	-	-	2018. 6. 7. ~ 2018. 6. 11.	5
				2018. 2 .3. ~ 2018. 2. 6.	4
3	-	-	_	2018. 8. 3. ~ 2018. 8. 7.	5
	,			2019. 2. 17. ~ 2019. 2. 19.	3
				2018. 8. 31. ~ 2018. 9. 2.	3
4	-	-	-	2019. 5. 3. ~ 2019. 5. 6.	4
				2017. 3. 31. ~ 2017. 4. 2.	3
				2017. 10. 6. ~ 2017. 10 .8.	3
				2017. 12. 16. ~ 2017. 12. 17.	2
			2018. 3. 24. ~ 2018. 3. 25.	2	
				2018. 4. 13. ~ 2018. 4. 15.	3
			-	2018. 5. 6. ~ 2018. 5. 7.	2
5	-	-		2018 .6. 29 .~ 2018. 7. 1.	3
				2018. 10. 26. ~ 2018. 10. 27.	2
				2018. 12. 29. ~ 2018. 12. 31.	3
				2019. 3. 8. ~ 2019. 3. 10.	3
				2019. 6. 21. ~ 2019. 6. 23.	3
				2019. 10. 18. ~ 2019. 10. 20.	3
6	-	-	-	2018. 3. 2. ~ 2018. 3. 5.	4
7	-	-	-	2019. 12. 19. ~ 2019. 12. 22.	4
				2018. 9. 16. ~ 2018. 9. 20.	5
				2018. 12. 5. ~ 2018. 12. 9.	5
0				2019. 5. 4. ~ 2019. 5. 6.	3
8	-	-	_	2019. 6. 10. ~ 2019. 6. 14.	5
				2019. 7. 27. ~ 2019. 7. 30.	4
				2019. 9. 20. ~ 2019. 9. 23.	4
				2018. 10. 25. ~ 2018. 10. 27.	3
9	-	-	-	2019. 2. 17. ~ 2019. 2. 20.	4
10	-	-	-	2017. 9. 29. ~ 2017. 10. 3.	5
11	-	-	-	2018. 11. 9. ~ 2018. 11. 11.	3

연번	학과	직위	성명	국외여행 기간	일수
12	-	-	-	2017. 10. 1. ~ 2017. 10. 4.	4
13	-	-	-	2019. 8 .7. ~ 2019. 8. 11.	5
1.4				2018. 2. 16. ~ 2018. 2. 18.	3
14	-	-	_	2019. 8. 20. ~ 2019. 8. 22.	3
15	-	-	-	2018. 7. 12. ~ 2018. 7. 16.	5
				2019. 7. 25. ~ 2019. 7. 29.	5
16	-	-	-	2019. 12. 20. ~ 2019. 12. 23.	4
17	-	-	-	2018. 5. 4. ~ 2018. 5. 7.	4
18	-	-	-	2020. 2. 6. ~ 2020. 2. 8.	3
				2017. 8. 18. ~ 2017. 8. 26.	9
				2018. 8. 30. ~ 2018. 9. 1.	3
				2018. 9. 20. ~ 2018. 9. 22.	3
19	-	-	-	2018. 10. 4. ~ 2018. 10. 6.	3
				2018. 10. 25. ~ 2018. 10. 27.	3
				2019. 4. 25. ~ 2019. 4. 29.	4
				2019. 12. 25. ~ 2019. 12. 26.	2
20				2017. 11. 8. ~ 2017. 11. 15.	8
20	-	-	_	2018. 11. 15. ~ 2018. 11. 21.	7
21				2017. 11. 18. ~ 2017. 11. 26.	9
21	-	_	_	2018. 11. 29. ~ 2018. 12. 7.	9
22	-	-	-	2018. 8. 15. ~ 2018. 8. 18.	4
				2017. 7. 1. ~ 2017. 7. 3.	3
				2018. 2. 7. ~ 2018. 2. 10.	4
23	-	-	_	2018. 7. 11. ~ 2018. 7. 14.	4
				2018. 9. 24. ~ 2018. 9. 26.	3
				2018. 11. 9. ~ 2018. 11. 11.	3
24	-	-	-	2019. 6. 6. ~ 2019. 6. 8.	3
				2017. 3. 3. ~ 2017. 3. 5.	3
25				2018. 2. 28. ~ 2018. 3 .4.	5
25	-	-	-	2018. 8. 2. ~ 2018. 8. 6.	5
				2018. 9. 21. ~ 2018. 9. 23.	3
26	-	-	-	2018. 3. 31. ~ 2018. 4. 2.	3
27				2018. 9. 21. ~ 2018. 9. 25.	5
27	<u>-</u>			2020. 1. 4. ~ 2020. 1. 13.	10

기관명 : 학교법인 김포대학, 김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학교법인 김포대학]
	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ㅇ 경고(1명)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사립학교법」제16조	【김포대학교】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	ㅇ 경고(7명)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교비회계는 등	
	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 통보	
	(2017~2019, 교육부)」에 따르면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김포대학 및 김포	
	대학교에 대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통보 하면서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17회계연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600,000천원을 비등록금회계에 편성·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전기 기타이월금 536,153천원) 등록금회계에	
	예산 편성 후, 실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539,140천원	
	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7회계	
	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871,169천원을 비등록금회계에 편성·집행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여력이 있었음에도 등록금회계에 예산 편성 후, 실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592,500천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결산				
회 계 연	사학연금법정부담금 납부			비등록금 희계 운영	사학연	비등록 사학연금법정부담금 납부 금회계 운영			법인회계 법정 <del>부담금</del> 전입금
도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전기 기타 이월금	납부 총액	등 <del>록</del> 금 회계	비등록금 희계	당기 기타 이월금	1 1
2017	600,000	600,000	-	536,153	539,140	539,140	-	519,338	3,000
2018	732,405	568,405	164,000	519,338	627,391	549,796	77,595	650,846	3,000
2019	892,764	702,764	190,000	650,846	513,564	503,564	10,000	809,419	10,000
합계	2,225,169	1,871,169	354,000		1,680,095	1,592,500		-	16,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한국어학원 외국인 수강과정 수업료 관리 부적정	
	· · · ·	<ul> <li>기관경고</li> <li>통보</li> <li>한국어학원 외국인</li> <li>수강과정 수업료</li> <li>장수등을 관련 규정에</li> </ul>
	수강생 21명에게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수업료 합계 31,190천원을 수납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한국어학원 외국인 수강과정 수업료 미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성명	국적	학번	한국어 과정 수업 기간	미납액	
		пэ		2017년 4분기	1,200	
1	-	몽골	-	2018년 1분기	1,200	
			]		2,400	
				2018년 2분기	1,100	
		n -		2018년 3분기	1,100	
2	-	몽골	-	2018년 4분기	1,100	
				2019년 1분기	1,100	
		소겨	]		4,400	
3	-	스리랑카	-	2018년 1분기	960	
4	-	터키	-	2019년 4분기	960	
5	-	터키	-	2018년 2분기	960	
6	-	터키	-	2019년 3분기	960	
		ПЭ		2018년 3분기	1,100	
7	-	몽골	-	2018년 4분기	440	
1		소겨	]	•	1,540	
		el al	-	2019년 2분기	600	
8	-	터키	-	2019년 3분기	600	
		소	]	•	1,200	
9	-	몽골	-	2018년 1분기	1,100	
	-	터키	-	2018년 2분기	960	
10			-	2018년 3분기	960	
10			20180026	2019년 1분기	960	
		소겨	2,880			
		ПП		2018년 4분기	1,100	
11	-	몽골	-	2019년 1분기	1,100	
		2,200				
		н л		2018년 3분기	1,100	
12	-	몽골	-	2019년 1분기	1,100	
		소계	소계			
13	-	터키	-	2018년 2분기	960	
14	-	러시아	-	2018년 1분기	960	
15	-	러시아	-	2018년 1분기	960	
16	-	몽골	1	2018년 4분기	550	
17	-	몽골	-	2018년 3분기	1,100	
18	-	몽골	-	2017년 4분기	1,200	
19	-	몽골	-	2018년 3분기	1,100	
				2019년 1분기	960	
20	-	카자흐스탄	-	2020년 1분기	440	
		 소겨	]		1,400	
21	-	몽골	_	2018년 2분기	1,200	
		합계		•	31,19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보수지침 개정 절차 부적정 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ㅇ 경고(7명)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김포대학 정관」제45조에 따르면 교원의	ㅇ 시정(회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김포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제5장에 따르면 교직원의	
	수당은 연구보조비, 연구상여금, 성과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사	
	지도비, 도서벽지수당, 직책(보직)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있고, 「김포대학교 교직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보직교수 중 겸직이 있는 경우는 상위	
	보직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1196,	
	2018. 3. 8.)」,에 따르면 각종 수당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공문	
	시행일 이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급액	
	회수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17.11.1.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결재만	
	으로 '부원장 보직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교직원	
	보수지침」을 개정하는 등 【붙임1】"이사회 의결 없는	
	보수지침 개정 현황"과 같이 2017.3.부터 2020.8.까지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총 18회에 걸쳐 교	
	직원보수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있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또한, 2017.11.20. E(◐처장 겸직)에게 교직원보수규정에		
) C	었는 '겸직수당' 명목으로 3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규정에 없는 겸직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11.부터 2020. 11.까지 위 E 등 교원 4명에게 교			
2	직원보수규정에 없는 겸직수당 합계 23,760천원을		
7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붙임1】

### 이사회 의결 없는 보수지침 개정 현황

연번	개정일	주요 개정사항
1	2017.11.1	·보직 겸직(교무학생처장, 한류문화관광과학부장·글로벌케이컬쳐센터장 겸직) 수당 신설 ·보직수당의 글로벌케이컬쳐센터장 금액 조정 ·보직 부원장수당 추가
2	2017.3.1	·보직수당의 학부장 추가 및 금액 조정 ·기타수당 조정
3	2017.4.1	·기타수당 지급기준
4	2018.1.1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범위 명시
5	2018.3.1	· 직책수당조정(학과장수당) · 기타수당 중 방화관리자, 열관리자, 운전수당, 사서수당, 건축기사수당, 전기기사수당, 연구업무수당 폐지
6	2018.7.1	·직책수당(감사실장 3,000천원 추가)
7	2018.8.1	· 직책수당의 전문위원 금액 조정 ·운전수당 신설 ·기타수당(국제교류처 한국어과정) 추가
8	2018.10.11	·감사수당 신설
9	2019.3.1	·감사위원 수당 변경
10	2019.4.1	·보직 겸직수당(기획·감사실장) 추가
11	2019.9.1	·가족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강사료 금액 조정
12	2019.10.7	·부총장(1,500천원) 및 발전기금 사업단장(1,000천원) 수당 신설 ·겸직수당(기획·감사실장, 교무·학생처장, 한류문화관광학부장· 글로벌케이컬쳐센터장 겸직) 삭제
13	2019.10.21	·기타수당 : 계약학과 운영 책임교원수당 신설
14	2020.1.11	·총장직무대행수당(3,000천원) 신설
15	2020.3.1	·부총장수당 인상(1,500,000원→2,000,000원) ·2개 이상의 센터장 임명 시 600,000원 지급, 기능직 직급보조비 삭제
16	2020.5.1	·기타수당 : 국제교류처(한국어학원) 삭제
17	2020.7.27	·신분병동(징계처분 등)시 보수감액 기준 신설
18	2020.8.24	·대학의 총장 및 직원부총장의 보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함 ·연봉제 일반직원 및 계약직원 연봉 등급표 조정 ·제수당 : 보직수당 및 직책수당 조정

### 규정에 없는 겸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Al vi	7) (1)	иm	그리 그리 그리 그리	보직수당	겸직수당	겸직수도	당 지급액
연번	직위	성명	겸직기간	(상위보직)	(지급월수)	합계액	'18. 4.이후 지급액
1	-	-	2017.11. ~ 2018.7.	700 (처장)	300 (9개월)	2,700	900
2	-	-	2017.11. ~ 2019.10.6.	700 (한류문화 관광학부장)	300 (24개월)	6,960*	5,460
3	-	-	2019.10.7.~ 2020.11.25.	1,500 (국제부총장)	500 (14개월)	6,900*	6,900
4	-	-	2018.8.~ 2019.9.	700 (처장)	300 (14개월)	4,200	4,200
5	-	-	2019.4. ~ 2020.1.	700 (실장)	300 (10개월)	3,000	3,000
		23,760	20,460				

<sup>\*</sup> 보직변경에 따른 일할 계산 지급액 포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특별희망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원으로서	ㅇ 경고(5명)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ㅇ 통보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 이사회 의결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거치지 않은 희망
	「학교법인 김포대학 정관」제39조의8, 제46조의2 및	
	「김포대학교 교원명예퇴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학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에 관한	이기 바람
	규정을 준용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	
	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	
	며,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	
	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18. 10. 23. 학교법인 정관의 위임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명예퇴직 요건인 근속기간 20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15년 이상 근속 교직원이 퇴직할	
	때에도 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교직원 특별 희망퇴직 시행 지침(총장 결재)"을 임의	
	제정한 후 2019. 2. 28.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과	
	AB(2000. 3.임용, 근속연수 19년)에게 특별 희망퇴직 수당	
	명목으로 156,803,58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특별	
	희망퇴직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2명의 교원에게 특별 희망퇴직수당 합계 254,135,448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별 희망퇴직수당 지급 현황

소속	직위	성명	퇴직수당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	-	-	156,803,580	2000. 3. 1	2019. 2. 28	19년
-	-	-	97,331,868	2000. 3. 1	2019. 2. 28	19년
핞	계		254,135,448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입시수당 지급 부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및 제21조제2항에	ㅇ 경징계(1명)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ㅇ 경고(10명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7조 관련 별표 1	ㅇ 시정(회수)
	및 별표 3에 따르면 지출항목인 '입시관리비'는 수입	- 입시업무수당을 임의
	항목인' 입시수수료 수입'과 대응되는 경비로 '입시	산정하여 초과 지급
	관리비' 중 '입시수당'은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한 수당 합계 25,050 천원을 당사자들로
	수당이고, 김포대학교「2019학년도 신입생모집 입시	부터 각각 화수하여
	수당 지급 기준(2018.5.16.)」에 따르면 입시에 참여하지	교비회계에 세입
	아니한 교직원에게 입시특별수당 등 명목의 기본수당	조치하기 바람
	지급을 금지하며, 입시 서류심사, 충원에 참여한	
	교직원은 입시업무 확인대장 작성 후 시간당 30천원을	ㅇ 통보
	지급하고,「입시관리비 집행 유의사항(교육부 사학	
	감사팀-1341, 2012.4.20.)」에 따르면 입학시험 관리에 동원	에게 지급된 입시 수당 합계 12,870
	된 교직원에 한하여 구체적인 수당 지급 산출 근거를	기 6 립계 <i>12,0</i> 70 천원에 대하여
	만들어 지급하고, 부당 집행 건에 대해 회수, 관련자	정산을 실시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도,	증빙이 되지 않는
	- 김포대학교는 2019.3.4. 2019학년도 정시 입시업무	금액은 교비회계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입시업무 확인대장에 11시간(입시	세입조치하기 바람
	업무수당 330천원)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과 교수 AC	
	에게 당해 연도 입시수당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1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시간을 임의로 계상하여 정상지급액(입시업무수당 330천원)			
	보다 450천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붙임1】 "입시수당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정시 입시업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AC 등 교직원 90명에게 당해			
	연도 입시수당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적게는 1시간			
	(입시업무수당 30천원)에서 많게는 62시간(입시업무수당			
	1,860천원)을 임의로 계상하여 정상지급액보다 합계			
	25,050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김포대학교는 AD가 ■과 교수 C를 대신하여			
	입시업무 참여시간을 83시간으로 임의* 기재하고 C가			
	서명하여 제출한 2019학년도 입시업무 확인대장을 받고도			
	객관적 검토 없이 입시수당 2,49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입시업무 참여시간 임의산정 입시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위 AD가 C 등 교직원 7명을 대신하여			
	입시업무 참여시간을 적게는 34시간에서 많게는 83			
	시간으로 임의 기재하고 C 등 교직원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9학년도 입시업무 확인대장에 대하여 객관적			
	검토 없이 입시수당 12,87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9.2.25.~2.28. C 교수는 혁신지원사업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T 집중(합숙)작업 중으로 입시업무 참여가 불가능하였음			

#### 【붙임1】

### 입시수당 초과 지급 현황

(금액단위 : 원)

							(	막단위 : 천)
연	학과(소속)	이름	실저	기지급	정싱	가지급	과디	<b>가지급</b>
번	1 1(= 1)	, ,	참여시간	입시수당	참여시간	입시수당	참여시간	입시수당
1	-	-	26	780,000	11	330,000	15	450,000
2	-	-	4	120,000	1	30,000	3	90,000
3	-	-	10	300,000	1	30,000	9	270,000
4	-	-	30	900,000	14	420,000	16	480,000
5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6	-	-	12	360,000	5	150,000	7	210,000
7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8	-	-	22	660,000	5	150,000	17	510,000
9	-	-	44	1,320,000	6	180,000	38	1,140,000
10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11	-	-	24	720,000	4	120,000	20	600,000
12	-	-	10	300,000	4	120,000	6	180,000
13	-	-	23	690,000	7	210,000	16	480,000
14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15	-	-	20	600,000	4	120,000	16	480,000
16	-	-	12	360,000	6	180,000	6	180,000
17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18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19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20	-	-	20	600,000	4	120,000	16	480,000
21	-	-	20	600,000	4	120,000	16	480,000
22	-	-	17	510,000	9	270,000	8	240,000
23	-	-	30	900,000	14	420,000	16	480,000
24	-	-	22	660,000	6	180,000	16	480,000
25	-	-	21	630,000	5	150,000	16	480,000
26	-	-	16	480,000	7	210,000	9	270,000
27	-	-	15	450,000	7	210,000	8	240,000
28	-	-	22	660,000	7	210,000	15	450,000
29		-	20	600,000	3	90,000	17	510,000

연	학과(소속)	이름	실제	]지급	정싱	기급	과디	<b>가지급</b>
<u>번</u>	7-1(4-7)		참여시간	입시수당	참여시간	입시수당	참여시간	입시수당
30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31	-	-	16	480,000	1	30,000	15	450,000
32	-	-	14	420,000	6	180,000	8	240,000
33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34	-	-	16	480,000	8	240,000	8	240,000
35	-	-	26	780,000	8	240,000	18	540,000
36	-	-	8	240,000	1	30,000	7	210,000
37	-	-	18	540,000	2	60,000	16	480,000
38	-	-	8	240,000	0	-	8	240,000
39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40	-	-	2	60,000	1	30,000	1	30,000
41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42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43	-	-	10	300,000	2	60,000	8	240,000
44	-	-	16	480,000	15	450,000	1	30,000
45	-	-	18	540,000	2	60,000	16	480,000
46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47	-	-	11	330,000	3	90,000	8	240,000
48	-	-	10	300,000	3	90,000	7	210,000
49	-	-	18	540,000	2	60,000	16	480,000
50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51	-	-	20	600,000	4	120,000	16	480,000
52	-	-	13	390,000	5	150,000	8	240,000
53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54	-	-	10	300,000	4	120,000	6	180,000
55	-	-	20	600,000	3	90,000	17	510,000
56	-	-	20	600,000	4	120,000	16	480,000
57	-	-	18	540,000	8	240,000	10	300,000
58	-	-	24	720,000	6	180,000	18	540,000
59	-	-	12	360,000	4	120,000	8	240,000
60	-	-	14	420,000	4	120,000	10	300,000
61	-	-	22	660,000	6	180,000	16	480,000

연	학과(소속)	이름	실저	기지급	정싱	가지급	과디	 }지급
번	77(47)	1 1	참여시간	입시수당	참여시간	입시수당	참여시간	입시수당
62	-	-	8	240,000	-	-	8	240,000
63	-	-	18	540,000	10	300,000	8	240,000
64	-	-	8	240,000	-	-	8	240,000
65	-	-	26	780,000	9	270,000	17	510,000
66	-	-	6	180,000	4	120,000	2	60,000
67	-	-	40	1,200,000	38	1,140,000	2	60,000
68	-	-	4	120,000	3	90,000	1	30,000
69	-	-	2	60,000	1	30,000	1	30,000
70	-	-	12	360,000	10	300,000	2	60,000
71	-	-	26	780,000	24	720,000	2	60,000
72	-	-	23	690,000	21	630,000	2	60,000
73	-	-	25	750,000	23	690,000	2	60,000
74	-	-	4	120,000	2	60,000	2	60,000
75	-	-	22	660,000	21	630,000	1	30,000
76	-	-	20	600,000	19	570,000	1	30,000
77	-	-	2	60,000	1	30,000	1	30,000
78	-	-	4	120,000	2	60,000	2	60,000
79	-	-	2	60,000	1	30,000	1	30,000
80	-	-	4	120,000	2	60,000	2	60,000
81	-	-	4	120,000	2	60,000	2	60,000
82	-	-	19	570,000	17	510,000	2	60,000
83	-	-	12	360,000	8	240,000	4	120,000
84	-	-	10	300,000	7	210,000	3	90,000
85	-	-	8	240,000	6	180,000	2	60,000
86	-	-	62	1,860,000	58	1,740,000	4	120,000
87	-	-	70	2,100,000	8	240,000	62	1,860,000
88	-	-	43	1,290,000	42	1,260,000	1	30,000
89	-	-	12	360,000	11	330000	1	30,000
90	-	-	2	60,000	1	30,000	1	30,000
			1,464	43,920,000	629	18,870,000	835	25,050,000

#### 【붙임2】

### 입시업무 참여시간 임의산정 입시수당 지급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임의산정 현황														A) 1) 2 7										
학과	이름			2019	). 1월											2019	). 2월	]								합계 시간	입시수당 지급금액
		21	22	23	24	25	26	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2	25	26	27	28		
-	-	4	4		4	4	5	4	4	4	5	5	4	4		4	4	5	3			4	4	4	4	83	2,490
-	-	4	4		4	4	5	4	4	4	5	5	4	4		4	4	5	3							67	2,010
-	-							4	4	4	5	5	4	4	4							2	2	2	2	42	1,260
-	-	4	4		4	4	5	4	4	4	5	5	4			4	4	5	3	2	4					69	2,070
-	-							4	4	4	5	5	4	4	4											34	1,020
-	-	4	4		4	4	5	4	4	4	5	5	4	4		4	4	5	3							67	2,010
-	-	4	4	4	3			4	4	4	5	5	4	4	4	4	4	5	5							67	2,010
합계		20	20	4	19	16	20	28	28	28	35	35	28	24	12	20	20	25	17	2	4	6	6	6	6	429	12,87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노동조합 운영경비 지급 부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ul><li>통보(문책, 경정계)</li></ul>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3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에 따르면	E.,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을	<ul><li>통보</li><li>향후 노동조합 운영비</li></ul>
	할 수 없고,「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등을 교비회계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서 지급하는 일이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없도록 하기 바람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17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 통보('17.8.28.)」에서도 노동	
	조합 운영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자 경고 및 노조	
	활동 관련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통보 처분을 받았음에도,	
	- 김포대학교는 2017. 3. 교비회계 집행 대상이 아닌	
	직원노동조합 운영경비 1,800천원을 교비회계(지출과목:	
	기타운영비)에서 AE의 개인계좌(하나은행)로 지급하는 등	
	【붙임】"노동조합 운영경비 교비회계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1. 2. 감사일 현재까지 교비회계	
	집행 대상이 아닌 노동조합 운영경비 합계 12,600천원을	
	교비회계(지출과목: 기타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노동조합 운영경비 교비회계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직위	수령자	지급현황
1	2017학년도 1학기	-	-	1,800,000
2	2017학년도 2학기	-	-	1,800,000
3	2018학년도 1학기	-	-	1,800,000
4	2018학년도 2학기	-	-	1,800,000
5	2019학년도 1학기	-	-	1,800,000
6	2019학년도 2학기	-	-	1,800,000
7	2020학년도	-	-	1,800,000
		합계		12,60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평생교육원 수강료(교비회계) 산단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ㅇ 경고(5명)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ㅇ 통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 산학협력단회계로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	세입처리한 평생
	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	교육원 수입 465,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620천원을 교비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교비	바람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	
	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김포	
	대학교 직제규정」 제11조(부속기관)에 따르면 김포대학교는	
	학칙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 평생	
	교육원, 송백도서관, 정보전산원, 보건실, 예비군중대를	
	두고, 「김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르면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18. 9. 4. 교비회계 세입처리 대상인	
	평생교육원 수강료(제1기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117,950	
	천원(수강생 40명)을 산단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붙임】 "평생교육원 수강료 산단회계 세입처리 현황"과	
	같이 2018. 9.부터 2021. 2. 감사일 현재까지 교비회계	
	세입처리 대상인 평생교육원 운영과정(총 5회) 수강료	
	합계 465,620천원을 산단회계로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	

## 평생교육원 수강료 산단회계 세입처리 현황

(단위 : 원)

연번	운영일자	과정명	수강인원	수입 금액
1	2018.9.4. ~ 2018.12.18.	제1기 부동산최고경영자	40명	117,950,000
2	2019.5.16. ~ 2019.11.21.	제15기 최고경영자	26명	75,850,000
3	2019.4.23. ~ 2019.10.15.	제4기 골프마스터	20명	79,260,000
4	2019.9.18. ~ 2020.1.7.	제2기 부동산최고경영자	17명	42,000,000
5	2020.7.9. ~ 2020.11.21.	제16기 부동산최고경영자	47명	150,560,000
		합 계		465,620,000

고(4명)
<sup>그(4명)</sup>
2
회계에서 지급한
협력단 비품
비 등 합계 천원을 산단
에서 교비회계
]출하기 바람

## 산학협력단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거래일자	적요	거래처	금액		
1	2019.2.1.	소상공인산학협력센터 행정용 컴퓨터(PC 및 모니터)	-	1,094,000		
2	2019.2.11.	소상공인산학협력센터 행정용 비품-책상 외 6종	-	1,650,000		
	합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연구노트 자체 규정 미비 등 관리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ㅇ 기관경고
	따르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ㅇ 통보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연구	
	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0.12.)」 제2조에 따르면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	을 제정하여 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제11조에 따르면 연구노트를	노트 보관관리에 만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을 기하기 바람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 규정을 마련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이에,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F가 수행한 '찰옥	
	수수를 이용한 ㄴㄷ과자 제조'(연구책임자: AF, 연구	
	기간: 2017.4.21.~2018.4.20., 연구비: 46,125천원, 전문기관:	
	▽▽평가원) 연구과제가 종료되었음에도 2021. 2. 감	
	사일 현재까지 자체 규정 미비로 연구노트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입학사정 부실 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등 부당	
	○「고등교육법」제15조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은	【①,②,③ 관련】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 중징계(1명)
	있으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고,「고등교육법」	【①,② 관련】
	제34조 및 제34조의5,「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면	ㅇ 중징계(1명)
	대학의 장은「고등교육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ㅇ 경징계(1명)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ul><li>통보(문책, 중징계)</li></ul>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ㅇ 경고(2명)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	(= 0)
	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	【② 관련】
	에서 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ㅇ 경고(16명)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ㅇ 통보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 대학입학전형 시행
	보유·관리하고 있는 충원율과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계획 및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른 입학사정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18~'20학년도, 한국전문대학	실시하여 학생을
	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선발하기 바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모집단위별 전공특성에	<별도조치>
	대한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4 1 1 1 1 1
	선발절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명시해야 하며,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	
	입학지원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지원자의 의사와 다르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연령·졸업연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2018~2020학년도	
	김포대학교 수시・정시 입학 안내(원서접수 유의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온라인제공동의 안내, 10.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입학원서는 학력, 지원학과 등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확인해야 하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입전형용 학생부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 출신자 등은	
	학생부 사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하고, 정시(충원 포함)는 학생부	
	성적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김포대학교 학칙」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8조에 따르면 입학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하고,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 계획,	
	심의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입학 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학생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고, 「김포대학교 대학윤리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입학생 모집 및 관리에서 부정 편입학, 부실 관리,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입시원서 접수 및 합격처리 부당 관련】 ①		
	- 김포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에서 인터넷 원서 접수 외에 '종이 입학원서' 211건을 접수 하여 입시전형을 진행하는 등 【붙임1】 "종이 입학원서		
	접수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자체 입시요강과 다르게 인터넷 원서 접수 외에 '종이 입학원서' 2,845건을 접수하여 입시전형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김포대학교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AH가 지원학과 항목을 공백으로 제출하였음에도 학교 관계자가 '♡계열'로 지원학과를 기재하고 원서접수하여 합격처리하는 등【붙임2】"입학원서 등 제3자 작성 현황"과 같이 위 AH 등 2명이 지원학과 또는 입학원서를		
	공백으로 제출하였음에도 학교 관계자 등 제3자가 지 원학과 등을 기재하고 원서접수하여 최종 합격처리한 사실이 있음		
	【입학사정 부당 등 관련】②		
	- 김포대학교는 2018학년도 정시(자율) 모집에서 →과 (주간)에 지원한 AI에 대하여 2018학년도 김포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모집계획과 달리 입학사정 없이 추가모집에 지원한 순서만으로 선발하는 등 【붙임3】 "정시(자율모집) 입학사정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김포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모집계획과 달리 추가모집에 지원한 순서만으로 AI 등 신입생 319명을 선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김포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1차(일반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원자 개인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지원자 AJ를 입학사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합격처리 하는 등 【붙임4】"학교생활기록부 등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 , <del>,</del>	• —

입시서류 미제출자 합격처리 현황"과 같이 2018학년 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수시 또는 정시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원자 개인 정보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한 위 AJ 등 25명을 입학사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합격처리 후, 교무위원회 심의도 없이 입학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특히, 위 25명 중 12명을 '18학년도(9명)와 '19학년도(3명) 신입생 충원율\*에 포함하여 실제보다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0.7% 높게 정보 공시한 사실이 있음

< \*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감사지적 반영 결과>

		당초		감사 결과 반영		허위 공시
공시연도	편제정원	신입생	신입생 충원율	신입생	신입생 충원율	오차
2018	1,344명	1,344명	100%	1,335명	99.3%	0.7%
2019	1,344명	1,344명	100%	1,341명	99.7%	0.3%

- 아울러, 김포대학교 AK는 2020학년도에 허위 입학자들 (136명)\*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면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등 입학생 모집·관리 등 분야에서 허위 입학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신입생 입학 관련 김포대 자체 특별감사 결과('20.4.~5.) 허위 입학자 136명을 확정하고, E 등 교직원 42명(교원 26명, 직원 16명)을 입시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
- 한편, 김포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18~'20학년도)와 입학공정관리위원회('18~'19학년도)는 입학사정 시 신입생 허위 입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입시에 필요한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입시담당부서의 검토 의견만 듣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전반적인 입학사정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 '18년 18명, '19년 7명(이상 교육부 감사), '20년 136명(이상 김포대 자체감사)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20학년도 신입생 자퇴 처리 부적정 등 관련 】③	
연번		처 분

#### 【붙임1】

### 종이 입학원서 접수 현황

(단위: 건)

=3 - 1	본교	인터넷	÷1 →1	
학년도	(종이원서)	유웨이	진학사	합계
2018	211	6,461	6,444	13,116
2019	614	8,346	7,463	16,423
2020	2,020	5,759	5,618	13,397
합계	2,845	14,807	13,907	29,539

#### 【붙임2】

## 입학원서 등 제3자 작성 현황

수험 번호	성명	정시 원서접수 기간	원서 접수일	학과	입학원서 작성자	입학원서 중 지원학과 작성자	비고
-	-	2019.12.30.	20.1.8.	<b>♡</b> 계열	본인	<b>제3자</b> (미상)	합격
-	-	~2020.1.13.	20.1.10.	<b>♡</b> 계열	<b>제3자</b> (미상)	<b>제3자</b> (미상)	합격

### 【붙임 3】

## 정시(자율)모집 입학사정 미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형구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2018	정시(자율)	106	10	116
2019	정시(자율)	0	7	7
2020	2020 정시(자율)		1	196
힘	-계	301	18	319

연 번	학년도	모집구분	수험번호	성명	생년	전형구분	학번	입학 학과	비고
1	2018	정시(자율)15차	-	-	1999	일반전형	-	-	
2	2018	정시(자율)20차	-	-	1999	일반전형	-	-	
3	2018	정시(자율)1차	-	-	1999	정원외 특별전형	-	-	
4	2018	정시(자율)3차	-	-	1999	일반전형	-	-	
5	2018	정시(자율)6차	-	-	1999	일반전형	-	-	
6	2018	정시(자율)19차	-	-	1998	일반전형	-	-	
7	2018	정시(자율)4차	-	-	1998	정원외 특별전형	-	-	
8	2018	정시(자율)7차	-	-	1998	일반전형	-	-	
9	2018	정시(자율)14차	-	-	1998	일반전형	-	-	
10	2018	정시(자율)18차	-	-	1999	일반전형	-	-	
11	2018	정시(자율)4차	-	-	1999	일반전형	-	-	
12	2018	정시(자율)2차	-	-	1999	일반전형	-	-	
13	2018	정시(자율)24차	-	-	1994	일반전형	-	-	
14	2018	정시(자율)26차	-	-	1999	일반전형	-	-	
15	2018	정시(자율)22차	-	-	1999	일반전형	-	-	
16	2018	정시(자율)12차	-	-	1998	일반전형	-	-	
17	2018	정시(자율)21차	-	-	1992	일반전형	-	-	자퇴
1	-				- 중 린	‡ -			

연 번	학년도	모집구분	수험번호	성명	생년	전형구분	학번	입학 학과	비고
296	2020	정시(자율)14차	-	-	1992	일반전형	-	-	자퇴
297	2020	정시(자율)12차	-	-	1992	일반전형	-	-	자퇴
298	2020	정시(자율)12차	-	-	1998	일반전형	-	-	자퇴
299	2020	정시(자율)17차	-	-	1991	일반전형	-	-	자퇴
300	2020	정시(자율)13차	-	-	1999	일반전형	-	-	
301	2020	정시(자율)5차	-	-	2000	일반전형	-	-	
302	2020	정시(자율)27차	-	-	1980	일반전형	-	-	자퇴
303	2020	정시(자율)18차	-	-	1989	일반전형	-	-	자퇴
304	2020	정시(자율)18차	-	-	1972	일반전형	-	-	자퇴
305	2020	정시(자율)18차	-	-	1959	일반전형	-	-	자퇴
306	2020	정시(자율)16차	-	-	1995	일반전형	-	-	자퇴
307	2020	정시(자율)16차	-	-	1993	일반전형	-	-	자퇴
308	2020	정시(자율)16차	-	-	1993	일반전형	-	-	자퇴
309	2020	정시(자율)20차	-	-	1984	일반전형	-	-	자퇴
310	2020	정시(자율)24차	-	-	1999	일반전형	-	-	
311	2020	정시(자율)11차	-	-	1982	일반전형	-	-	
312	2020	정시(자율)3차	-	-	2001	일반전형	-	-	
313	2020	정시(자율)14차	-	-	1992	일반전형	-	-	자퇴
314	2020	정시(자율)17차	-	-	1985	일반전형	-	-	자퇴
315	2020	정시(자율)27차	-	-	1979	일반전형	-	-	자퇴
316	2020	정시(자율)18차	-	-	1986	일반전형	-	-	자퇴
317	2020	정시(자율)2차	-	-	2001	일반전형	-	-	
318	2020	정시(자율)14차	-	-	1990	일반전형	-	-	자퇴
319	2020	정시(자율)13차	-	-	1980	일반전형	-	-	자퇴

<sup>\* &#</sup>x27;20학년도 자퇴자는 김포대 특별감사 결과 허위입학자로 확인됨

【붙임4】

### 학교생활기록부 등 입시 서류 미제출자 합격처리 현황

연 번	연도	모집구분(전형) * 정원내	수험 번호	성명 (생년)	지원학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여부 (O, X)	신입생 <del>충원율</del> 포함 여부 (O, X)	비고
1	2018	수시1차(일반)	21448	-	-	х	0	졸업
2	2018	수시2차(일반)	-	-	-	х	х	미등록
3	2018	수시2차(일반)	-	-	-	х	x	등록 후 환불 ('18.1.2.)
4	2018	수시2차(일반)	-	-	-	х	0	졸업
5	2018	수시2차(일반)	-	-	-	х	0	자퇴제적 ('18.4.3.)
6	2018	정시2차(일반)	-	-	-	х	х	등록 후 환불 ('18.2.28.)
7	2018	정시2차(일반)	-	-	-	х	0	자퇴 제적 ('18.3.2.)
8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0	재학
9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0	졸업
10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х	미등록
11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0	자퇴제적 ('20.8.13.)
12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х	미등록
13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х	미등록
14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0	자퇴제적 ('20.8.13.)
15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х	등록 후 환불 ('18.2.28.)
16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0	자퇴제적 ('20.9.29.)
17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x	등록 후 환불 ('18.2.28.)
18	2018	자율모집(일반)	-	-	-	х	x	등록 후 환불 ('18.2.28.)
19	2019	수시1차(일반)	-	-	-	x	x	등록 후 환불 ('19.9.11.)
20	2019	수시1차(일반)	-	-	-	х	х	미등록
21	2019	수시1차(일반)	-	-	-	х	0	졸업
22	2019	수시1차(일반)	-	-	-	х	0	졸업
23	2019	수시1차 (일반)	-	-	-	х	x	미등록
24	2019	수시2차(일반)	-	-	-	х	x	미등록
25	2019	수시2차(일반)	-	-	-	х	О	졸업

#### 【붙임5】

###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환불 처리 진행 현황

문서형태	문서명 (시행:●팀 → 수신:□팀)	등록금 환불자	문서 내용	비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관련 자퇴처리 간소화 서비스 요청	54명				
	3월 3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37명				
	3월 4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28명				
	3월 5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11명	■ 개요 2020至11년 기이게 이번			
	3월 6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4명	-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등록금			
	3월 9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7명	환불을 요청한 학생에 대 하여 자퇴처리 시 서류절차			
	3월 10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3명	간소화 처리를 요청 - ■ 처리 방법	□팀은 내부결재로 이후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		
업무협조전	3월 13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2명	- 시대 정립 - 2월 28일(금) 11시 이후 입학포기 신청자는 학교	금 환불요청에 따른 자 퇴처리 건'이라는 문서명 으로 총장에게 내부결재		
	추가 3월 13일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퇴처리 건	2명	에 직접 방문하여 자퇴 서류를 제출하고 자퇴 하여야 하나, 신종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접촉을 피하고자 유선상으로 신분확인되면 입학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적 으로 ☑처 교학팀에 제 출, 자퇴처리 후 등록금 환불	를 받음 (자퇴처리일기준: 3.3.//3.4./3.5/3.6/3.9/3.10/3.11/ 3.13/3.13(추가))  * 결재선 : □팀 담당자(2명)-□ 처장-총장		
	총 계	148명				

 [참고 1]

 2020학년도 정시(자율모집) 신입생 허위 입학 및 등록금 환불 현황

연번	학번	성명	생년 (성별)	지원학과	등록일	환불액 (단위:원)	예금주	환불일자	자퇴일자/ 학적변동
1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6	2020.03.05 / 자퇴제적
2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3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4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5	-	-	-	-	20200225	2,985,000	-	2020.03.09	2020.03.06 / 자퇴제적
6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6	2020.03.05 / 자퇴제적
7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8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9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0	-	-	-	-	20200226	2,985,000	-	2020.03.10	2020.03.09 / 자퇴제적
11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2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3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4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5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6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7	-	-	-	-	20200226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18	-	-	-	-	20200228	2,985,000	-	2020.03.10	2020.03.09 / 자퇴제적
19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0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1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22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연번	학번	성명	생년 (성별)	지원학과	등록일	환불액 (단위:원)	예금주	환불일자	자퇴일자/ 학적변동
23	-	-	-	-	20200225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24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25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6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7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8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9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30	-	-	-	-	20200225	2,985,000	-	2020.03.09	2020.03.06 / 자퇴제적
31	-	-	-	-	20200228	2,985,000	-	2020.03.10	2020.03.09 / 자퇴제적
32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33	-	-	-	-	20200221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34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35	-	-	-	-	20200227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36	-	-	-	-	20200227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37	-	-	-	-	20200226	2,985,000	_	2020.03.10	2020.03.09 / 자퇴제적
38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39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40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41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42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43	-	-	-	-	20200226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44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45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6	2020.03.05 / 자퇴제적
46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6	2020.03.05
47	-	-	-	-	20200227	2,985,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48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49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50	_	-	-		20200225	2,985,000	-	2020.03.09	2020.03.06 / 자퇴제적
51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연번	학번	성명	생년 (성별)	지원학과	등록일	환불액 (단위:원)	예금주	환불일자	자퇴일자/ 학적변동
52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53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54	-	-	-	-	20200225	3,483,000	_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55	-	-	-	-	20200226	3,483,000	-	2020.03.11	2020.03.10 / 자퇴제적
56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57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58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59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60	-	-	-	-	20200226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61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62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63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6	2020.03.05
64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65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66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67	-	-	-	-	20200226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68	-	-	-	-	20200225	2,985,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69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70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71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72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73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74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75	-	-	-	-	20200227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76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77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78	-	-	-	-	20200227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79	-	-	-	-	20200228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80	-	-	-	-	20200225	3,483,000	_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연번	학번	성명	생년 (성별)	지원학과	등록일	환불액 (단위:원)	예금주	환불일자	자퇴일자/ 학적변동
81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82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83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84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85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86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87	_	_	-	-	20200227	3,483,000	-	2020.03.06	2020.03.05
88					20200228	3,483,000		2020.03.11	/ 자퇴제적 2020.03.10
		-	-	-			-	2020.03.11	/ 자퇴제적 2020.03.02
89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4	/ 자퇴제적
90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91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92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93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94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95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96	-	-	-	-	20200221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97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98	_	_	-	_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3
99		_	_	_	20200225	3,483,000	_	2020.03.04	/ 자퇴제적 2020.03.02
100		_	_		20200227	3,483,000	_	2020.03.06	/ 자퇴제적 2020.03.05
100		_	_		20200227	, ,	_		/ 자퇴제적 2020.03.03
101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 자퇴제적
102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03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04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05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06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07	-	-	-	-	20200226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108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09	-	-	-	-	20200228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연번	학번	성명	생년 (성별)	지원학과	등록일	환불액 (단위:원)	예금주	환불일자	자퇴일자/ 학적변동
110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111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12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6	2020.03.05 / 자퇴제적
113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14	-	-	-	-	20200225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115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6	2020.03.05 / 자퇴제적
116	-	-	-	-	20200227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17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18	-	-	-	-	20200227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19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20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21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22	-	-	-	-	20200226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123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6	2020.03.05 / 자퇴제적
124	-	-	-	-	20200226	2,985,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125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26	-	-	-	-	20200227	2,985,000	-	2020.03.05	2020.03.04 / 자퇴제적
127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128	-	-	-	-	20200225	2,985,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2020.03.02
129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020.03.03
130	-	-	-	-	20200227	3,583,000	-	2020.03.05	2020.03.03 / 자퇴제적 2020.03.02
131	-	-	-	-	20200225	3,483,000	-	2020.03.04	2020.03.02 / 자퇴제적 2020.03.02
132	-	-	-	-	20200226	3,483,000	-	2020.03.04	/ 자퇴제적 2020.03.02
133	-	-	-	-	20200228	2,985,000	-	2020.03.04	/ 자퇴제적 2020.03.04
134 135	-	-	-	-	20200226	2,985,000 3,483,000	-	2020.03.05	/ 자퇴제적 2020.03.02
				-					/ 자퇴제적 2020.03.03
136	-	-	- - -	-	20200224	3,483,000	-	2020.03.05	/ 자퇴제적
			총 계			458,056,000			

[참고 2]
2020학년도 신입생 허위입학 관련 교원(26명) 징계 현황

학부	학과	성명	징계처분	소청 여부	청구내용	소청심사 결과		
		-	정직3월	×				
		-	해임	0	"해임 취소 또는 감경"	"해임처분 취소" (고소* 및 행정소송** 진행 중)		
	-	-	정직3월	×				
		-	정직1월	×				
		-	정직3월	×				
		-	해임	0	(/의)이 키 2 rr 느 키 커//	"해임처분 취소"		
		-	해임	0	"해임 취소 또는 감경"	(고소* 및 행정소송** 진행 중)		
	<del>-</del>	-	정직3월	×				
△학부		-	정직1월	×				
		-	해임	0				
	-	-	해임	0	((-)) +) -) -) -) -) ((	"해임처분 취소"		
		-	해임	0	"해임 취소 또는 감경"	(고소* 및 행정소송** 진행 중)		
	-	-	해임	0				
	-	-	정직3월	×				
		-	해임	0	"해임 취소 또는 감경"	"해임처분 취소" (고소* 및 행정소송** 진행 중)		
	-	-	정직3월	×				
■학부	-	-	정직1월	×				
• •	-	-	정직2월	0	"정직2월 처분 취소"	취하		
		-	해임	0	"해임 취소 또는 감경"	"기각"		
	-	-	정직1월	×				
		-	정직1월	0	"정직1월 취소"	2021. 3월 심사 예정		
	-	-	정직3월	×				
▼학부		-	정직3월	×				
	-	-	정직3월	×				
		-	정직1월	0	"정직1월 취소"	취하		
	-	-	정직3월	0	"정직3월 취소"	취하		

<sup>\*</sup> 김포대는 "업무방해"혐의로 <<</a>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 → 현재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 진행 중(고소인 조사는 완료)

<sup>\*\*</sup> 학교법인 김포대학교는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  $\rightarrow$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21.01.13.)

【참고 3】

### 2020학년도 신입생 허위입학 관련 직원 징계 결과

연				허위입학	징계요구	및 처분		
번	성명	소속	직급	추천자	징계요구	징계처분 ('20.7.28.)	정계 사유	비고
1	-	-	-	8	중징계	정직3월	허위입학자 추천 및 등록금 대납	입시 담당
2	-	-	-	2	중징계	정직1월	허위입학자 추천 및 등록금 대납	입시부서
3	-	-	-	3	중징계	정직1월	허위입학자 추천 및 등록금 대납	환불 담당부서
4	-	-	-	1	중징계	정직1월	허위입학자 추천 및 등록금 대납	학부 팀장
5	-	-	-	3	경징계	감봉1월	허위입학자 추천 및 등록금 대납	
6	-	-	-	-	경징계	견책	수입(환불) 업무 담당자	
7	-	-	-	6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8	-	-	-	3	경징계	감봉1월	허위입학자 추천	
9	-	-	-	5	경징계	감봉1월	허위입학자 추천	
10	-	-	-	2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11	-	-	-	1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12	-	-	-	1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퇴사 (2020.07.30.)
13	-	-	-	1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퇴사 (2020.10.19.)
14	-	-	-	1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15	-	-	-	2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16	-	-	-	5	경징계	견책	허위입학자 추천	퇴사 (2020.08.07.)

### 【참고 4】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모집연도	모집구분	개최 일시	회의 내용
2018	수시1차	2017.10.30.	<ul> <li>작년대비 지원율이 감소되었지만 무리 없이 모집을 잘함</li> <li>입학사정제외자 총 73명 : 일반전형 자격미달(□과 실기 미응시자 등) 45명, 특별전형 자격미달 13명, 정원외 자격미달(자격미달, 서류 미제출등) 15명</li> </ul>
2018	수시 2차	2017.12.18.	<ul> <li>작년대비 지원율이 감소되었지만 무리 없이 모집을 잘함</li> <li>입학사정 제외자 총 49명 : 일반전형 자격미달 47명(학생부 미제출,</li> <li>□ 실기고사 미응시 등), 특별전형 자격미달 1명, 정원외 자격미달 1명</li> </ul>
2018	정시2차, 자율모집	2018.01.29.	<ul> <li>전체적인 인원감소로 볼 때 무리 없이 모집을 잘함</li> <li>입학사정 제외자 총 51명: □과 실기 미응시자 46명, 서류 미제출자 5명</li> <li>2018학년도 자율모집의 경우 미달학과 추가 지원자에 대해 접수 선착순으로 합격시키고, 학과에서 최종 입학 사정대장을 확인하여 진행</li> </ul>
2019	수시1차	2018.10.25.	■ 무리없이 모집을 잘하였음
2019	수시2차	2018.12.10.	■ 무리없이 모집을 잘하였음 ■ 사정제외 198명 : 실기고사 미응시, 학생부 미제출, 자격미달 등 사유로 제외
2019	정시	2019.01.28.	■ 사정제외 114명으로 실기고사 미응시, 학생부 미제출 등 ■ 2019학년도 추가 모집 시 원서접수 순으로 합격 및 등록
2020	-	-	※ 감사자료 제출 거부

### 입학공정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모집연도	개최 일시	회의 내용
2018	2018.3.26.	■ 입시공정성 검토 이상 없음 ■ 전산처리 및 동점차 처리 이상 없음 ■ 학과 개편 및 신입생 등록율 100%를 위한 노력 필요
2019	2019.3.29.	■ 전반적인 입시절차 및 입학관리 등 입시업무의 공정성 등 문제없음 ■ 입학서류 및 성적처리, 동점자 처리 등 전산처리 문제 없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김포대학교 ☑처는 허위 입학자 136명이 발생한 2020	
	학년도 정시(자율모집) 입시결과와 관련하여 2020. 2. 28.	
	2020학년도 제6차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한 결과를 AK에게 보고하고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해당 문서('20.2.28. ●팀-2557)의 보존연한을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1년으로 한 사실이 있고,	
	- 2020. 9. 교육부 실태점검(전문대학지원과) 및 2021. 2.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20학년도 허위입학	
	관련 김포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제6차) 심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	
	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절차 등 부적정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절차 등 부적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 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2021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2019.11.)」 "정원 조정 유의사항"에 따르면 학과 통폐합 및 모집단위 조정 시, 변경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학생, 교수, 교직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법령·학칙에 따른 사전공고,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김포대학교「학과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르면 학과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 폐과 등 구조개편을 학과에서 요구할 경우 학과 교수전체의 동의를 거친 후 학과구조개편 계획서를 기획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서에 대하여 대학발전기획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하며, 폐과 및 통합 대상학과의 전임교원은 전공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과대상 학과 학생 모집정지 등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o 기관경고  o 통보  - 학과구조개편 계획 하라 및 의견 반영 방법 등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는 하도록 사전 등을 마련하고,  - 모집정지(향후 폐과) 학급권 보호 및 재직교원에 대한 전공전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평가 및 학과 의견 반영 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등 다수의 이해관 계자와 관련된 「
	마련하지 않고 구조개편을 진행함으로써 ◈과는 학 과에서 구조개편 요청이 없음에도 정원을 5명 증원	학칙, 변경 사항은 학생, 교수, 교직원
	시키는 등 【붙임】"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학 생정원 조정 현황"과 같이 김포대학교 대학발전기획	등 대학구성원들 이 충분히 알 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위원회는 ◈과 등 2개 학과에서 정원증원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원을 각각 5명, 20명씩 증원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김포대학교는 위 구조개편 계획에 대하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집정지 대상 학과 학생 등 재학생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아니하였고, 동 학과구조개편계획을 확정하면서 2021학년도 모집정지 학과 재학생및 휴학생등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권 확보 대책, 모집정지 학과 교원들의 전공전환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아울러, 김포대학교는 '2021학년도 학생정원조정 계획'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위한 2020. 8. 13.부터 9. 3.까지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를 하면서 재직 중인 교직원만접근할 수 있는 내부 업무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교직원업무연락)을 통해 공고를 하여 학생 등 대학 일부 구성원은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있도록 사전공고 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학 칙」에 세부 규정 을 마련하여 운영 하시기 바람

###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학생정원조정 현황

								모:	 집정지 디		 선정 기준	<u> </u>			
학과명	<i>'</i> 20년 정원	학과 의견	대학발전 기획	(등록금	교육원가 (등록금 대비 신입생 충원· 인건비 비율%)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약	념률		종합 평가 결	!과	
	'강현		위원회	비율	순위	충원율	순위	충원율	순위	취업률	순위	교육 원가 (가중치 3)	신입생 충원율 (가중치 7)	점수 합계	순위
-	60			23.17	24	100.00	19	90	11	93.3	21	72	133	205	1
-	30		입 학 정 원 5명 증원	39.05	23	100.00	19	100	16			69	133	202	2
-	35	최근 입시지원율 및 3년간 신입생 충원율 100% 등을 감안하여 입학정원 35명 → 45명으로 변경	입 학 정 원 10명 증원	31.90	22	100.00	19	78.5	4			66	133	199	3
-	30		입 학 정 원 5명 증원	50.08	17	100.00	19	92.9	14	66.7	13	51	133	184	4
-	60	<ul> <li>■ 학과명변경 :</li> <li>■ 과</li> <li>■ 입시지원율</li> <li>감소 추세를</li> <li>감안 입학정원</li> <li>60명 → 40명</li> <li>으로 변경</li> </ul>		43.56	21	98.33	17	100	16	77.8	19	63	119	182	5

								모.	집정지 다	내학학과 <i>/</i>	선정 기준	<u> </u>			
학과명	<i>'</i> 20년 정원	학과 의견	대학발전 기획	교육원가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종합 평가 결과			
	' 경원		위원회	비율	순위	충원율	순위	충원율	순위	취업률	순위	교육 원가 (가중치 3)	신입생 충원율 (가중치 7)	점수 합계	순위
-	40			21.28	28	97.50	14	77.3	3			84	98	182	5
-	40	입 시 지 원 율 100% 등을 감안 하여 입학정원 을 40명 → 50명 으로 변경	입 학 정 원 10명 증원	23.45	26	97.50	14	83.8	6			78	98	176	7
-	40			62.86	14	100.00	19	65.8	2	56.3	6	42	133	175	8
-	75		입 학 정 원 20명 증원	60.75	13	100.00	19	104.3	25	48.9	2	39	133	172	9
-	60			65.93	12	100.00	19	88.3	8	66.7	14	36	133	169	10
-	40	최근 입학자원 감소와 입시지원 율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입학정 원을 40명→30명 으로 변경	입 학 정 원 5명 증원	33.57	19	95.00	13	82.8	5	72.5	18	57	91	148	11
-	32			91.67	4	100.00	19	139.4	28	57.6	8	12	133	145	12
-	32			97.94	3	100.00	19	92.7	13	100.0	22	9	133	142	13

								모?	집정지 다	내학학과 <i>/</i>	선정 기준	<u> </u>			
학과명	<i>'</i> 20년 정원	학과 의견	대학발전 기획	교육원가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종합 평가 결과			
	경원		위원회	비율	순위	충원율	순위	충원율	순위	취업률	순위	교육 원가 (가중치 3)	신입생 충원율 (가중치 7)	점수 합계	순위
-	60			79.40	7	98.33	17	100.8	21	72.2	17	21	119	140	14
-	70	<ul> <li>◎과의 3개년 종합 평가 감소와 최근</li> <li>◎과 입시 지원율 감소추세를 감안 하여 70명 →60명 으로 변경</li> </ul>		41.45	18	94.29	12	89.5	10	61.1	10	54	84	138	15
-	60			14.80	25	90.00	8	91.8	12	43.8	1	75	56	131	16
-	40			62.91	8	97.50	14	88	7	70.9	16	24	98	122	17
-	60			63.96	11	91.67	11	105.8	26	63.3	11	33	77	110	18
-	70	입시지원율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입학정원을 70명 → 60명으로 변경		51.59	16	90.00	8	103.3	24	81.8	20	48	56	104	19
-	35			71.67	9	91.43	10	111.2	27	55.6	4	27	70	97	20

								모.	집정지 다	대학학과 ·	선정 기준	기준					
학과명	<b>'20년</b>	학과 의견	대학발전 기획	교육· (등록금 인건비	내비 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종합 평가 결과					
	정원		위원회	비율	순위	충원율	순위	충원율	순위	취업률	순위	교육 원가 (가중치 3)	신입생 충원율 (가중치 7)	점수 합계	순위		
-	40	입시지원율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입학정원을 40명 →30명으로 변경		60.55	15	87.50	7	100	16			45	49	94	21		
-	40	■ 입시지원율 감소 추세를 감안, 입학정원 을 40명→30명 으로 변경 ■ 전공심화과정 (3,4학년)개설 15명	입 학 정 원 10명 감원	46.07	20	60.00	3	96	15	63.8	12	60	21	81	22		
-	60	입시지원율 감소 추세를 감안, 입 학정원을 60명 → 50명으로 변경		72.96	10	83.33	6	100	16	51.2	3	30	42	72	23		
-	30			123.02	2	73.33	5	100	16			6	35	41	24		
-	30			126.00	1	66.67	4	62.2	1	60.0	9	3	28	31	25		

								모:	집정지 디	비학학과 <i>/</i>	선정 기준	<u>.</u>			
학과명	<b>'2</b> 0년 정원	학과 의견	대학발전 기획	교육 (등록금 인건비	' 대비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종합 평가 결과			
	78 TE		위원회	비율	순위	충원율	순위	충원율	순위	취업률	순위	교육 원가 (가중치 3)	신입생 충원율 (가중치 7)	점수 합계	순위
-	65	■입시지원율 감소 추세를 감안 입학 정원을 65명→ 30명으로 변경 ■신설학과개설 : □과 입학정원 30명	모집 정지	90.67	5	50.77	2	100.8	21	55.7	5	15	14	29	26
-	60	■학과명 변경 : ▲과 ■입학정원 60명→ 50명으로 변경	모집 정기	89.41	6	46.67	1	89.4	9	66.7	14	18	7	25	27
총 계	총 계 1,294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편입학 정원 초과 모집	
	○ 「고등교육법」제2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ㅇ 경고(3명)
	따르면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김포대학교 학칙」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편입학은	
	당해 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생 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ul> <li>김포대학교는 2020. 1. 「2020학년도 1학기 편입학 모집」</li> </ul>	
	전형을 실시하면서 □과 3학년의 여석(결원)이 8명임	
	에도 2명 초과한 10명을 선발하는 등 【붙임】"2020	
	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정원 초과 모집 현황"과 같이	
	■과 3학년 등 총 2개 모집단위에서 입학정원 여석(결원)	
	보다 총 5명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한 사실이 있음	

### 편입학 정원 초과 모집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편입학	모집	정원 초과	
연번	- 학기	모집단위	모집단위 학년 입학정원		여석(결원)	모집인원	인원	
1	2020-1	-	3	60	8	10	2	
2	2020-1	-	2	40	6	9	3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3	전과제도 운영 부당	
	○「고등교육법」제23조의2,「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르면	ㅇ 경징계(2명)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고등	○ 경고(24명)
	교육법」제34조의5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장은 매 학년도	0 - (== 0)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2018~2020학년도)」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	
	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포대	
	학교 학칙」제2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전과는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에게 허가할 수 있고,	
	전과 당시 해당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김포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표와 강의 시간표에 따라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시스템에서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김포대학교 대학윤리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입학생 모집 및 관리에서 부정	
	편입학, 부실 관리,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김포대학교는 당초 2018학년도 ▽과(정시모집)에 지원	
	하였으나 탈락하고 정시자율모집에서 ▷과에 합격한	
	AL 학생에게 자체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	
	(▲학 등 5개 전공)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당초	
	지원학과의 교과목(▽과, 6개 전공)을 미리 수강하게 허	
	용하고 다음 학기(1학년 2학기)에 ▽과로 전과를 허가	
	하는 방식으로 전과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붙임】"전과제도 편법 운영 현황"과 같이 2018학	
	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당초 지원학과에 탈락하고	
	정시자율모집 등을 거쳐 다른 과에 입학한 위 AL 등	
	학생 28명에게 자체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할 전공	
	교과목 등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당초 지원학	
	과의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도록 허용하고 다음 학기	
	(1학년 2학기)에 전과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과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지원 후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과에 입학 후 전과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2018. 3. 5. 부서장 회의	
	에서 "2018학년도 입학자 중 전과 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공유한 바 있음	

### 전과제도 편법 운영 현황

43.03					당초 지원학교	4		입학학과(2	소속 학과)		교과목 수깅 (1학년 1학		전과학과
연번	학년도	학번	성명	모집 구분	학과명	지원일자	모집 구분	학과명	지원일자	수강 과목 수	수강학과	수강 과목 수	(1학년 2학기)
1	2018	-	-	정시	▽과	2018-01-10	자율	▷과	2018-02-12	0	▽과	6	▽과
2	2018	-	-	정시	<b>૭</b> 과	2018-01-09	자율	<b>○</b> 과	2018-02-23	0	<b>૭</b> 과	6	<b>૭</b> 과
3	2018	-	-	정시	<b>O</b> 과	2018-01-16	자율	<b>○</b> 과	2018-02-23	0	<b>(</b> )과	6	<b>③</b> 과
4	2018	-	-	정시	<b>૭</b> 과	2018-01-11	자율	▶과	2018-02-28	0	O라	6	<b>૭</b> 과
5	2018	-	-	정시	<b>O</b> 과	2018-01-08	자율	<b>◀</b> 과	2018-02-24	0	O과	6	<b>૭</b> 과
6	2018	-	-	정시	O과	2018-01-16	자율	<b>™</b> 과	2018-02-28	0	○과	5	○과
7	2018	-	-	정시	0과	2018-01-15	자율	▶괴	2018-02-28	0	○과	5	○과
8	2018	-	-	정시	<b>●</b> 과	2018-02-27	자율	<b>◀</b> 과	2018-02-27	0	●과	7	<b>●</b> 과
9	2018	-	-	정시	□과	2018-01-06	자율	<b>○</b> 과	2018-02-26	0	□과	8	■과
10	2018	-	-	정시	□과	2018-01-08	자율	<b>○</b> 과	2018-02-27	0	□과	8	□과
11	2018	-	-	정시	■과	2018-01-06	자율	②라	2018-02-21	0	교과	8	□과
				수시	□과	2017-09-15							
12	2018	-	-	수시	□과	2017-11-08	자율	<b>8</b> 과	2018-02-28	0	□과	8	■과
				정시	□과	2018-01-14							
13	2018	-	-	정시	교과	2018-01-06	자율	<b>8</b> 과	2018-02-21	0	□과	8	□과
14	2018	-	-	정시	□과	2018-01-16	자율	▶과	2018-02-28	0	□과	8	■과

43.03	4.1-	<b></b>	y		당초 지원학	과		입학학과(	소속 학과)		교과목 수강 현황 (1학년 1학기)		전과학과
연번	학년도	학번	성명	모집 구분	학과명	지원일자	모집 구분	학과명	지원일자	수강 과목 수	수강학과	수강 과목 수	(1학년 2학기)
4.5	2010			수시	□과	2017-11-17	-) ó	<b>▼</b> ¬]	2010 02 20	0	<b>□</b> ■ ¬Ì	0	<b>□■</b> ¬)
15	2018	-	-	정시	□과	2018-01-16	사율	▶과	2018-02-28	0	Ⅱ과	8	□과
16	2018	-	-	정시	교과	2018-01-12	자율	▶과	2018-02-28	0	교과	8	□과
17	2018	-	-	정시	(과	2018-01-16	자율	⊋과	2018-02-23	0	(과	5	● 과
18	2018	-	-	정시	(과	2018-01-07	자율	<b>₽</b> 과	2018-02-28	0	(과	5	● 과
19	2018	-	-	정시	과	2018-01-15	자율	▶과	2018-02-28	0	과	6	D과
20	2018	-	-	정시	<b>▲</b> 과	2018-01-10	자율	▶과	2018-02-27	0	<b>▲</b> 과	6	<b>▲</b> 과
21	2018	-	-	정시	<b>▲</b> 과	2018-01-16	자율	▶과	2018-02-27	0	<b>▲</b> 과	6	<b>▲</b> 과
22	2018	-	-	정시	<b>◇</b> 과	2018-01-06	자율	<b>2</b> 라	2018-02-26	0	<b>◇</b> 과	6	<b>◇</b> 과
23	2018	-	-	정시	<b>◇</b> 과	2018-01-15	자율	<b>☎</b> 과	2018-02-26	0	<b>◇</b> 과	6	♦과
24	2018	-	-	정시	<b>◇</b> 과	2018-01-08	자율	▶과	2018-02-27	0	<b>◇</b> 과	6	◇과
25	2018	-	-	수시	<b>◇</b> 과	2018-11-14	자율	▶과	2018-02-21	0	<b>◇</b> 과	6	♦과
				수시	<b>◇</b> 과	2017-09-26							
26	2018	-	-	수시	<b>◇</b> 과	2017-11-16	자율	▶과	2018-02-21	0	◇과	6	◇과
				수시	<b>◇</b> 과	2017-11-26							
27	2018	-	-	정시	<b>◇</b> 과	2018-01-08	자율	<b>◀</b> 과	2018-02-27	0	<b>◇</b> 과	6	♦과
29	2020	-	-	정시	□과	2019-12-30	자율	<b>그</b> 라	2020-02-27	0	□과	5	□과
30	2020	-	-	정시	<b>▶</b> 과	2020-01-07	자율	리고	2020-02-28	0	▶과	4	▶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에 따르면 대차대조	【① 관련】
	표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ㅇ 경고(8명)
	있도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규칙」제49조 및	· 통보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 관련 규정등에 따라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재물조사를 실시
	다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	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간건된 기에기 타급
	되어 있고,「김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제16조 제2호에	【② 관련】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	
	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경고(6명)
	「김포대학교 물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규정」제10조	<ul><li>통보</li><li>분실 또는 망실한 자에</li></ul>
	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재물조사는	- 군을 <del>되는</del> 장글만 사에 대해서는 관련규
	2년마다 1회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처장	정에 따라 적의
	은 재물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조치하기 바람
	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의 분실 및 파손 발생 시 해당	
	부서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의 분실 및 파손 시 물품관리책임자는 변상 조치	
	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재물조사 미실시에 관한 사항】①	
	- 김포대학교는 2016학년도 정기 재물조사('16.9.20.~'16.12.9.)를	
	실시한 이후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2018학년도	
	및 2020학년도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 2018학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물품의 도난,		
	망실, 파손, 불용처리 및 재고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2018학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기계기구(소계 9,065,411천원),		
	집기비품(소계 3,092,101천원) 등 자산금액 합계 12,157,512		
	천원을 유형 고정자산으로 결산보고 한 사실이 있음		
	【물품 분실 및 망실에 관한 사항】 ②		
	- 김포대학교 J는 2012. 9. 28. 취득한 '노트북'을 미상		
	일에 분실하고도 사무처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		
	"비품 분실 및 망실 현황"과 같이 위 J 등 교수 6명은		
	위 '노트북' 등 총 6점(취득가액 합계 6,300천원)을 미상		
	일에 분실 또는 망실 했음에도 사무처에 보고 및		
	변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비품 분실 및 망실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비품명	규격 (자산번호)	취득일	취득 가액	잔 <b>존</b> 가액	관련학부	교수명	분실일
1	노트북	HP 6-1014TX (20120928-A004)	2012-09-28	1,050	0	-	-	미상일
2	노트북	HP 6-1014TX (20120928-A012)	2012-09-28	1,050	0	-	-	미상일
3	노트북	HP 6-1014TX (20120928-A019)	2012-09-28	1,050	0	-	-	미상일
4	노트북	HP 6-1014TX (20120928-A025)	2012-09-28	1,050	0	-	-	미상일
5	노트북	HP 6-1014TX (20120928-A037)	2012-09-28	1,050	0	-	-	미상일
6	노트북	HP 6-1014TX (20120928-A043)	2012-09-28	1,050	0	-	-	미상일
	합계			6,300	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수의계약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ㅇ 경고(2명)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규칙」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	
	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20. 2. 17.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김포	
	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20.2.17.~'20.5.31., 계약금액: 80,000천원)'을 ㈜♤♤(대표	
	AM)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26 시설공사 임의 시공 부당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법률」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지자체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지사제상의 순공검사을 받도독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따르면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된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알 ㅜ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13. 12. 김포시로부터 '주차장 및 도로
조성 개발행위허가*(위치: ㅇ 일원, 사업기간:13.12.17.~'16.12.16.)'를
받은 후 2015. 8. 24. 육육건설(주)(대표 AN)과 계약한
"김포대학 외부 <del>주</del> 차장 공사(계약금액: 270,000천원, 공사기간·15.8.24.
~'15.11.23.)"를 진행하면서 당초 설계도서(김포시 허가내용)
에는 주차장 부지의 높이를 기존 땅 높이(H=0)로 하고
부지 인근 하천(이하 '수현천'이라함) 주변으로 돌망태 <sup>**</sup> 설치 및 암거(물이 흐르는 콘크리트 BOX) 보강 등을 하
도록 되어 있는데도, 김포시 허가내용인 돌망태 설치
및 암거 보강을 하는 대신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동일 공사금액 범위에서 주차장 높이를 주변부지 높이
(H=3)와 같게 하기 위해 설계보다 높게(평균 약 3m) 성토

여번	지 적 사 항	처 분
	, , , ,	, –

(흙쌓기) 하게 하는 등 【붙임】"주차장 설치공사 임의시공 현황"과 같이 2015. 8.부터 2018. 10.까지 위 '김포대학 외부주차장 공사'등 시설공사 2건(계약금액 합계 796,790천원)을 진행하면서 김포시 허가내용인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동일 공사금액 범위에서 주차장 부지를 높이고 수현천을 복개\*\*\*하는 등 임의로 시공하게 한사실이 있으며,

- \* 임야, 논, 밭 등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절차
- \*\* 굵은 철사 등을 엮어서 만든 망에 돌덩어리들을 집어넣어 만든 보호망
- \*\*\* 개울 등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관로를 설치하고, 관로 위를 덮어 개울 등의 하천이 보이지 않게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
- 김포대학교는 위 임의 시공한 내용으로 김포시에 '개 발행위허가 설계변경'을 신청('18.11.) 하였으나,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김포시로부터 '설계변경'이 거부되어 사업기간('13.12.17.~'18.12.31.) 내에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득할 수 없게 되자 허가 기간을 2020. 12. 16.까지 연장한 후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받기 위해 추가로 3차 공사\*를 발주하면서 임의 시공된 시 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비\*\* 약 425,000천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등 교비회계 손실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
  - \* 제2주차장 3차공사(계약금액:725.000천원. 공사기간:'21.1.1.~4.30.)
  - \*\* 임의로 시공한 용벽, 하천 복개시설, 우수관로, 도로포장 등 철거후 당초 설계도면대로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 <참조 ; 허가신청 경과>

허가명	신청일	개발행위 사업기간(허가사항)	비고
주차장 및 도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2013. 12.	2013. 12. 17. ~ 2016. 12. 16.	
주차장 및 도로 조성 개발행위허가(변경1차)	2018. 8. 16.	2013. 12. 17. ~ 2018. 12. 31.	개발행위 기간연장 (승인)
주차장 및 도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설계변경	2018. 11.	반려	신청 취하* (2018.11.30.)
주차장 및 도로 조성 개발행위허가(변경2차)	2019. 9. 18.	2013. 12. 17. ~ 2020. 12. 16.	개발행위 기간연장 (승인)
주차장 및 도로 조성 개발행위허가(변경3차)	2020. 9. 22.	2013. 12. 17. ~ 2021. 12. 16.	개발행위 기간연장 (승인)

\* 김포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구두 상 반려 통보를 받고, 대학에서 설계변경 신청을 취하함

### 주차장 설치공사 임의 시공 현황

(단위 : 천원)

연	공사명	5 J. 11 O	공사비			a., 11 0	ار احدید	
번	(공사기간 / 계약금액)	공사내용	당초	변경	중감액	변경내용	변경사유	
	김포대학 외부주차장 공사	성토 (홁쌓기)	3,807	255,308	251,501	부지높이 3m 상향조정 (A=9,790㎡)	도로에서 부지로 진입하는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지 높이 변경	
1	('15.8.24. ~ '15.11.23. / 270,000천원)	암거 날개벽 및 유출부 설치 등 암거 보강	242,006	0	△242,006	미시공	부지 높이 변경(3m성토)으로 암거 보강 불필요	
	※육육건설(주) (대표 AN)	돌망태 설치	9,495	0	△9,495	미시공	부지 높이 변경에 따라 성토로 대체	
	소 계		255,308	255,308	0	동일 계약금액	내에서 공사내용 변경 시공	
		보강토 옹벽 설치	0	77,192	77,192	공사방법 변경	공기단축 및 공사방법 용이성 확보를 위해 당초 L형 옹벽을 보강토 옹벽으로 공법 변경	
	김포대학교 개발행위허가 주차장 외 공사 ('18.8.7. ~ '18.10.30. / 526,790천원) ※☆☆건설(주) (대표 AO)	수현천 복개공사 (암거 설치)	0	17,226	17,226	공사방법 변경	성토로 인해 수현천과 부지의 높이차가 커지면서 작업의 용이성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복개공사로 공법 변경	
2		L형 옹벽 설치	40,140	0	△40,140	미시공	보강토 옹벽으로 공법 변경	
	-/	우수관 설치 등 기타공사	124,810	70,532	△54,278	일부 관로 변경 등 공사량 축소	수현천 복개공사로 공법 변경	
	소 계		164,950	164,950	0	동일 계약금액	내에서 공사내용 변경 시공	

	3 . 石工川号亚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당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①, ② 관련】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	○ 중징계(1명)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ul><li>통보(문책, 중징계)</li></ul>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1명)
	인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입찰공고」낙찰	【① 관련】
	방식에 의해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ul><li>● □ □ □</li><li>● 통보(문책, 경징계)</li></ul>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2명)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 0)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조치>
	「사립학교법」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	_ ,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	ㅇ 수사의되
	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학교법인 김포대학 정관」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포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심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집행을 위하여 입찰방법, 참가자격, 계약방법의	
	결정 등 주요 사항의 결정에 있어 계약체결자 및 담당 부서의 자문에 의한 전문적인 심의 기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명경쟁입찰 실시 부당에 관한 사항】①	
	- 김포대학교는 2020. 2. 12.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예정가격: 27,500,000천원, 예산액: 24,970,000천원)"를 제한경쟁	
	으로 입찰 공고하여 2020. 3. 10. 개찰한 결과, 입찰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연번</u>	지 석 사 항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유찰되었는데도, 다시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고 기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에게만 예산액 이내로 2020. 3. 17. 다시 투찰하도록 하게 하는 등 【붙임】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부당입찰 현황"과 같이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 위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를 실질적으로는 2020. 3. 17.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2020. 4. 2.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금액: 24,970,000천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을 선정한 사실이 있음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하였고, 최종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은 건축	저 문
	하가 이후 진행하기로 함  【시설공사 시공업체 평가 부당에 관한 사항】②	
	- 김포대학교 사무처 AP는 2020. 3. 10. 위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입찰 시공업체를 선정·평가하는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공사수행계획서 평가(대학본부 216호회의실)" 및 재투찰일('20.3.17.) 이후 2020. 3. 23.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공사수행계획서 평가위원들의사무·연구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업체 선정과 관련한평가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평가위원 H 등 3명의 위원들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 또는 "㈜●●만 있고, ㈜■■이나 ㈜▲▲은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대표 AQ)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사실이 있으며,	
	<ul> <li>※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공사수행계획서 평가' 당일(20.3.10.) 업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선정 평가 미완료</li> <li>나아가, 2020. 3. 10. AK가 평가서에 평가점수를 기입하지 않고 서명만 작성하여 AP에게 제출하자 해당 평가서에 평가대상 3개 시공업체 중 ㈜●●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AP이 직접 평가점수를 기입한 사실이 있음</li> </ul>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참조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위원명 (주) ㈜금●● ㈜▲▲ 합계 \* AP를 통해 ㈜●●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평가위원

###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부당 입찰 현황

(단위 : 천원)

연	- 7 (1 -1 -1	최초 투찰금액	재 투찰금액	평가결과			
번	투찰업체명	(′20.3.10.)	('20.3.17.)	총점	평균	순위	
1	(주)●●	26,070,000	24,970,000 *	640	91.4	1	
2	(주) 🔳 🗖	25,850,000	24,970,000 *	594	84.9	2	
3	(주)▲▲	28,600,000	28,288,000	489	69.9	3	

<sup>\*</sup> 대학이 발표한 글로벌캠퍼스 건립공사 예산액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홍보 부적정	
28	<ul> <li>글로벌캠버스 소성사업 용모 무석성</li> <li>○「고등교육법」제4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목적, 명칭, 위치,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li> </ul>	<ul> <li>동보</li> <li>교육부 위치변경</li> <li>승인 없이 활용된</li> <li>제2캠퍼스 관련</li> </ul>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김포대학교는 2017. 7. 15. '운양동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부에 "김포대학교 위치변경(일부이전*)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1. 17. 철회하였고, 이후 2019. 4. 24. 제1차 캠퍼스개발추진위원회에서 위 '운양동 제2캠퍼스 조성사업' 대신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였음에도 2019. 5. 14. '김포대학교 운양캠퍼스 조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언급없이 '미래 문화 콘텐츠 창의혁신 인재 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 K-Culture 특성화 프로그램·글로벌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제2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로 홍보하는 등 【붙임】 "김포대학교 운양동 글로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캠퍼스(제2캠퍼스) 관련 홍보현황"과 같이 교육부의 위		
	치변경(일부이전)을 승인받지 않았는데도 2019. 5.부터		
	2020. 4.까지 기숙사 건립 계획을 제2캠퍼스 등 '캠퍼스		
	조성'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음		
	* ●과, ■과, ☎과 이상 3개 학과		
	※ '캠퍼스' 개념 및 조건 : 본교와 하나의 대학으로 학과, 학부, 단과 대학 등 학교시설을 위치변경인가(일부이전) 또는 통폐합 결과로 2곳 이상의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		

【붙임】 김포대학교 운양동 글로벌캠퍼스(제2캠퍼스) 관련 홍보현황

시기구분	홍보매체	홍보제목	주요 언급내용	개시날짜
교육부	보도자료	김포대학교 운양캠퍼스 조성*	<제2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 1.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2. 다양한 학생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3. 미래 문화콘텐츠 창의혁신인재 양성 교육과정 확대 4. K-Culture 특성화 프로그램 및 글로벌 레지던스프로그램 확대 운영	2019. 5. 15. ※ 관련 공문: 대학홍보센타75
위치변경 철회 후 (*18.1.이후)	홈페이지	김포대,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조성…교육 인프라 구축	<ol> <li>대학특성화사업의 중심축 K-Culture</li> <li>김포대학교 운양동 제2캠퍼스</li> </ol>	2019. 5. 15.
	홈페이지 (홍보브로셔)	김포대학교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건립	1. 최고의 입지 글로벌캠퍼스 2. 지역민과 하나되는 캠퍼스 3. 사업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캠퍼스 4. K-culture 교육 중심지 5.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중심지 6. 최신 기숙사	2020. 4. 29.

<sup>\*</sup> 보도자료 첫 번째 글 : 김포대학교(총장 F)는 <u>제2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u>를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조성한다.

<sup>※</sup> 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 뉴스▶▶('19.5.14. 김포대학교,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글로벌캠퍼스 조성), ▼▼저널 ('19.5.15. 김포대, <u>제2캠퍼스 글로벌캠퍼스</u>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조성), ◀◀신문('19.5.15. 김포대, 한강신도시에 제2캠퍼스 조성) 등 여러 인터넷신문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보도